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2023년도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2023년도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I. 2023년 조례 입법평가 개요

1.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표	3
2.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요약	4

II. 입법평가 조례 결과 보고

1.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11
2.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회 지원 조례	31
3.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49
4.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67
5.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89
6. 전라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107
7.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121
8.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139
9.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	159
10.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175
11.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91
12.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213
13.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	243
14.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265
15. 전라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287
16. 전라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	301
17. 전라북도 거리에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19
18.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337
19.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355
20.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373

2023년도 조례 입법평가 개요

1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표

총 20건	현행유지	일부개정	전부개정	통폐합	비고
	0	15	2	3	

순번	조례명	상임위/소관부서	평가의견 (위원회)	유형
1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행자위/정책기획관	일부개정	자치
2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회 지원 조례	행자위/자치행정과	전부개정	자치
3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행자위/자치행정과	일부개정	위임
4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행자위/방호예방과	일부개정	자치
5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행자위/대외협력과	통폐합	자치
6	전라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환복위/물통합관리과	일부개정	위임
7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환복위/생활환경과	일부개정	위임
8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환복위/노인복지과	일부개정	자치
9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	환복위/장애인복지과	일부개정	자치
10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환복위/건강증진과	일부개정	자치
11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농경위/알자리민생경제과	일부개정	자치
12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농경위/농촌활력과	전부개정	자치
13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	농경위/미래산업과	일부개정	자치
14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농경위/미래산업과	일부개정	위임
15	전라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농경위/농업정책과	일부개정	위임
16	전라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	문건위/주택건축과	일부개정	자치
17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건위/문화산업과	일부개정	자치
18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문건위/문화산업과	일부개정	자치
19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문건위/문화산업과	통폐합	자치
20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문건위/관광산업과	통폐합	자치

2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요약

연번	조례명	상임위	유형	심층분석 의견
1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행자위	자치	- 전라북도에서 서부권에 비하여 발전 격차가 있는 동부권 지역의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전라북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할 것임. 향후 이 조례의 목적하는 바가 정책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한다면, 타 시·도의 사례와 같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	행자위	자치	- 2020.3.31.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어 사업과 지원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음. 「지방행정동우회법」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이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조례 전부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행자위	위임	-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에게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실제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권고할 필요가 있음
4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행자위	자치	- 집행부에서 조례 내 안심하우스, 긴급생활비지원과 같은 신규 사업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이를 반영한 개정안 마련을 검토함
5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통폐합)	행자위	자치	-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와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재능기부는 폭넓게 살펴보면 자원봉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어 보임

연번	조례명	상임위	유형	심층분석 의견
6	전라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환복위	위임	- 특별한 심층분석 사유가 없음.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권고함
7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	환복위	위임	- 공회전 단속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검토함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정의견을 제시함
8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환복위	자치	- 고령친화도시는 각 시·군에 맞는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집행부의견이 있음. 이에 대하여 심층분석을 통해 정비 검토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시·군의 계획과 별개로 전라북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은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에서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계획과 조례상 계획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노인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맞추어 기본 조례에서 정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개별 조례로 규율하도록 노인·고령 관련 조례 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등이 노인 복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함
9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	환복위	자치	- 조례의 규정 체계에 맞게 규정하도록 제2조와 제3조, 제4조의 규정 순서를 정비하도록 검토 필요. 심층분석을 통해 제시함(통상적으로 정의, 책무, 지원대상 순으로 규정함) - 타 시·도와 같이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을 폭넓게 규정하도록 조례 제명 정비 검토함

연번	조 례 명	상임위	유형	심층분석 의견
10	전라북도 건전한 음 주문화 환 경 조 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환복위	자 치	- 특별한 심층분석 사유가 없음.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권고함
11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농경위	자 치	-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하여 민원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민원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 검토함 - 다만, 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인력 및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12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	농경위	자 치	-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통상 총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성체계인데, 이 조례에서는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 입법체계를 고려했을 때 전부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 례 (일부개정)	농경위	자 치	- 조례 제4조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부여하고 있으며, 계획을 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정비 검토함 - 다만, 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① 심의·자문이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하거나, ② 유사한 협의회가 그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대행 규정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조례 제9조에 대학과 협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 정비
14	전라북도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 례 (일부개정)	농경위	위 입	- 조례의 제명을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도록 검토함
15	전라북도 관리방조제의 범 위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농경위	위 입	- 특별한 심층분석 내용 없음.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함

연번	조 례 명	상임위	유형	심층분석 의견
16	전 라 북 도 공 동 주 택 층 간 소 음 방 지 권 고 조 례 (일부개정)	문 건 위	자 치	<input type="checkbox"/> 조례 제명 분석 - 「전라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는 타 시·도와 비교하여 그 내용상 특별히 개정이 필요한 시사점이 발견되지는 않음 <input type="checkbox"/> 타 시·도 사례 분석 - 전라남도는 제8조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7	전 라 북 도 거 리 예 술 활 성 화 및 지 원 에 관 한 조 례 (일부개정)	문 건 위	자 치	- 집행부에서 “거리예술은 다양한 예술활동 중 하나로, 「지역문화진흥법」,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활성화가 가능하고 사업발굴 및 추진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유지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는 의견을 제시한바 심층분석을 통해서 통합가능성을 검토함 - 거리예술 지원 조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라북도를 포함하여 28개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거리예술인과 거리예술을 관람하기 위한 도민을 배려 필요). 현행과 같이 별도로 유지하면서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권고함
18	전 라 북 도 통 합 문 화 이 용 권 지 원 조 례 (일부개정)	문 건 위	자 치	- 제6조에서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 조례 제7조의2 제2항에서는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해서 “공유 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민간위탁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제3항에서는 “제2항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조치 결과와 제9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 및 제12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연번	조례명	상임위	유형	심층분석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서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상 규정과 달리 재협약의 방법으로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임. 심층분석을 통해 해당 조항 개선 방안을 검토함 -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맞게 따르도록 검토함
19	전라북도 문화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통폐합)	문건위	자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한 조례(「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가 존재하며, 사업발굴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음. 심층분석을 통해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와의 통합을 검토함 - 앞서 입법취지와 조례의 기능이 유사한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또한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통폐합하는 방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0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통폐합)	문건위	자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고 단순 사업을 나열하는 수준이며, 소관부서에서 위원회 폐지를 원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통폐합하는 방안 검토

— 01 —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I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례명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06. 5. 12.	최근개정·시행일	2019. 12. 31./2019. 12. 31. (전부개정1회 /일부개정8회)
소관 부서	정책기획관/균형발전팀	소관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문장부호, 띄어쓰기 정비 등 일반 정비 검토
	개정 권고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검토 -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연임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정비 검토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적절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 조례 제3조에 따른 발전계획, 제6조의 특별회계 설치 등을 이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내용의 적정성	적정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조례의 공정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현실 부합성	적정	- 전라북도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체질 강화, 도정 주요시책의 역동적 추진을 견인할 경제분야 조직의 기능과 위상 강화, 도의회 예결산심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적정	-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임
※ 기타 의견	- 없음	

II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시·군별 5개년 발전계획 수립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6조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사업평가, 포상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6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정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지역에 한정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정 목적이 낙후된의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입법 근거에 합당함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개정 미 실시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8조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서부권에 비해 발전격차가 있는 6개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해 유지 필요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특별회계 관련 규정 정비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III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p>○ 최종의견 : (8-1) 서부권에 비하여 발전격차가 있는 6개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p>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본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공동 의원 발의를 통하여 제정하였으며, 제1조에 따라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2-3)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함 : ‘발전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군별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함 - (2-4) 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실시함 : [발전사업 지원(30,000,000천 원(2020년)/36,000,000천 원(2021년)/36,000,000천 원(2022년))] - (2-5)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함 : [발전사업 평가(2020년) (2021.02.23.) / 발전사업 평가(2021년) (2022.03.17.) / 발전사업 평가(2022년) (2023.04.02.)] - (2-5)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 시·군에 사업비 인센티브를 지원함 - (3-1) 제6조에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발전사업’을 시행함(지원액: 2020년 300억 원/2021-22년 매년 360억 원) - (3-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범위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제2조에 “동부권이란 전라북도 내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는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6개 시·군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음 - (3-3) 조례에 따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함 - (3-6)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행정기관 재량권의 적정 범위를 규정함 : 제5조(평가인센티브 등) ① 도지사는 동부권발전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되며 사업추진 우수 시·군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6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동부권 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부권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4-1) 조례 제2조에 “동부권이란 전라북도 내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는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6개 시·군 지역을 말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동부권 지역에 한정하고 있어 특정지역 차별 조항이 확인됨
- (4-2) 조례 제정 목적이 낙후된 동부권 발전 지원으로 되어있어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확인됨
- (7-1) 조례 제8조에 “동부권 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주요시책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동부권발전위원회를 둔다.” 고 규정하여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 하도록 되어 있음
- (7-2) 동부권발전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규정된 위원회로 판단됨
- (7-3) 위원회 위원의 위촉직 성별의 비율은 남성 9명(60%) 여성 6명(40%)로 하고 있음
- (7-4) 조례에 따라 위원회는 2020년도 3회, 2021년도 3회, 2022년도 3회 실시하였으며, 대면심의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음
- (7-5) 동부권 발전의 효율적 추진 및 주요시책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확인됨

■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붙임1 참조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본 조례는 전라북도 내 동부권 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발전계획 수립, 특

별회계 설치·운영, 사업 평가 등이 이뤄짐으로써 동부권 지역 특화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서부권에 비하여 발전 격차가 있는 동부권 지역의 발전 지원에 이바지하고 있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동부권 발전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원칙)	제3조(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사업의 선정)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대상지역 선정)
제5조(평가·인센티브 등)	제5조(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	제5조(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제6조(지역균형발전계획 점검 및 평가 실시)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의2(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
제6조의2(존속기한)	제7조(지역균형발전 시책 반영)	제7조(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	제6조의2(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연차보고)
제8조(동부권발전위원회 설치)	제9조(구성 및 운영)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
제9조(구성)	제10조(전담조직)	제10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실비변상 등)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1조(특별회계의 관리·운영)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11조(시행규칙)	제12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1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의 관리·운영)
	제1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영)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4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제14조(구성과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6조(회의)	제12조(구성과 운영)
		제17조 삭제	제12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제18조(간사)	제13조(회의)

		제19조(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3조의2(분과위원회)
		제20조(수당)	제13조의3(간사)
		제21조(준용)	제14조(수당 등)
		제22조(시행규칙)	제15조(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등)
			제16조(준용)
			제17조(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그 외 타 광역자치단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IV 개정의견

현행	개정 의견	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전라북도</u> 내 동부권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부권 지역의 특화 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전라북도</u> 내 동부권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부권 지역의 특화 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띄어쓰기 정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부권”이란 <u>전라북도</u> (이하 “도”라 한다)내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는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6개 <u>시·군</u> 지역을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부권”이란 <u>전라북도</u> (이하 “도”라 한다) 내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는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6개 <u>시·군</u> 지역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정의 규정의 일반적인 표현 방식에 맞게 정비 -띄어쓰기 정비 -“시·군”으로 문장부호 정비
제3조(동부권 발전계획의 수립) <u>전라북도</u>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부권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u>동부권 발전계획</u> 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1. 동부권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2. 동부권의 <u>지리적 특성과 산업·경제적 자원 등을 고려한 식품·관광 등 개발계획</u> 3. 생략	제3조(동부권 발전계획의 수립) <u>전라북도</u>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부권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u>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u> (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1. 개발계획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추진목표 2. 동부권의 <u>지리적·인문학적 특성, 문화적 유산 등을 고려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품·관광 자원 등의 개발계획</u> 3. 현행과 같음	-띄어쓰기 정비 -정확한 계획의 명칭 표기 -이하 조문(제4조, 제5조, 제6조 등)에서 “동부권 발전계획”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발전계획”이 바른 약칭임(법제처 권고사항 - 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건설링 사례집」 218면) -문장정비(의미 구체화)
제4조(사업의 선정) 동부권 발전 사업은 <u>동부권 발전계획</u> 에서 정한 개발 방향에 맞게 <u>시·군</u> 에서 신청하고 동부권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사업의 선정) 동부권 발전 사업은 <u>발전계획</u> 에서 정한 개발 방향에 맞게 <u>시·군</u> 에서 신청하고 동부권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시·군”으로 문장부호 정비 -약칭한대로 용어 사용하도록 “발전계획”으로 정비
제5조(평가·인센티브 등) ① 생략 ② 평가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되며 사업추진 우수 <u>시·군</u> 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평가·인센티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되며 사업추진 우수 <u>시·군</u> 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군”으로 문장부호 정비

<p>제6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동부권 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부권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6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부권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제6조의2에서 존속기한을 두고 있으므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정비 검토 -약칭한대로 용어 사용하도록 “발전계획”으로 정비</p>
<p>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p>	<p>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띄어쓰기 정비</p>
<p>제8조(동부권발전위원회 설치) ① 동부권 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주요시책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동부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4. 생략 5. 그 밖의 동부권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p>	<p>제8조(동부권발전위원회 설치) ① 동부권 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주요시책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북도 동부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동부권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p>	<p>-정확한 위원회 명칭 표기 - “그 밖의”를 “그 밖에”로 수정('그 밖이'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그 밖의'를 쓰고, 뒤에 오는 서술어와 호응하는 경우 '그 밖에'를 씀)</p>
<p>제9조(구성) ① 생략 ②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 관계 실·국·본부장 및 6개 시·군 부단체장으로 한다. ③ 생략 1. 동부권 6개 시·군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 2~3. 생략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9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 관계 실·국·본부장 및 6개 시·군 부단체장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1. 동부권 6개 시·군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 2~3. 현행과 같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삭제></p>	<p>-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새로운 2년을 임기로 하여야 함(법제처 권고사항임-「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24, 226면) -“시·군”으로 문장부호 정비</p>

<p>제10조(실비변상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삭 제> -</p>	<p>-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은 “수당”에 대하여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당 규정(제15조)이 자동 적용되므로 규정의 실익 없음(법제처 권고사항임-「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건설팀 사례집」 194면)</p>
<p>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p>-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p>

※ 심층분석

- 전라북도는 타 시·도와 달리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어 운영하고 있음
- 전라북도에서 서부권에 비하여 발전 격차가 있는 동부권 지역의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전라북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할 것임. 향후 이 조례의 목적하는 바가 정책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한다면, 타 시·도의 사례와 같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두어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현 상황에서는 개정안의 제시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통하여 반영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됨

□ 참고자료 1 -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조례 제명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p>제19조(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균형발전 조사 연구, 사업 발굴·평가 등의 업무 지원 2. 지역균형발전 관련계획 수립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수행 3.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연차보고서 작성 4.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과 평가 및 모니터링 업무 지원 5. 지역균형발전사업 컨설팅, 권역 또는 시·군별 연구팀 운영 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을 도 출자·출연기관,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p>제15조(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내 지역발전수준 조사·분석 등의 체계적인 연구 수행 2.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과 평가 및 모니터링 업무 지원 3. 지역균형발전사업 컨설팅을 위한 분야별 자문단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센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향후 동부권 발전 지원 조례의 형식이 아닌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로의 전환 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위원회 개최 현황

- 위원회 구성

구분	정원	현원	당연직	위촉직	
				남	여
위원수(명)	25	25	10	9	6
비율(%)	100	100	-	60	40

- 위원회 개최 실적

연도별	2020	2021	2022
개최건수	3	3	4
개최일	4.9, 6.12, 9.24	3.26, 4.12~13, 9.16.	5.9~11, 9.21~23, 10.21~24, 12.7~9.
소요예산	1,890천 원	1,960천 원	1,420천 원

□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내역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0	동부권발전사업	300억 원	300억 원	300억 원	6개 시·군 16개 사업
2021	동부권발전사업	360억 원	360억 원	360억 원	6개 시·군 24개 사업
2022	동부권발전사업	360억 원	360억 원	360억 원	6개 시·군 27개 사업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2. 31.] [전라북도조례 제4726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전라북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내 동부권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부권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부권”이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는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6개 시군 지역을 말한다.
2. “동부권 발전사업”이란 식품·관광 등 동부권의 특화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계획수립 및 사업선정 등

제3조(동부권 발전계획의 수립)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부권을 대상으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동부권 발전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1. 동부권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2. 동부권의 지리적 특성과 산업·경제적 자원 등을 고려한 식품·관광 등 개발계획
3. 그 밖에 동부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사업의 선정) 동부권 발전사업은 동부권 발전계획에서 정한 개발 방향에 맞게 시군에서 신청하고 동부권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평가·인센티브 등) ① 도지사는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되며 사업추진 우수 시군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동부권특별회계 등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동부권 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부권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의2(존속기한) [본조신설 2018. 12. 21]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1]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등)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19. 8. 9>
2. 삭제 <2019. 8. 9>
3.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부권 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2. 동부권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의 지출
3. 예비비 등

제4장 동부권발전위원회 등

제8조(동부권발전위원회 설치) ① 동부권 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주요시책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동부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부권 주요시책 및 재원분담 등 조정에 관한 사항
3. 동부권 발전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동부권 발전사업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동부권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 관계 실·국·본부장 및 6개 시군 부단체장으로 한다.<개정 2019. 12. 31>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동부권 6개 시군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
2. 식품·관광산업 분야의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3. 그 밖의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개정 2014. 10. 22, 2019. 1. 2>

제10조(실비변상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5. 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02 —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회 지원 조례

I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례명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회 지원 조례		
조례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00. 11. 13.	최근개정·시행일	2006. 5. 12./2006. 5. 12. (일부개정 2회)
소관 부서	자치행정과 / 행정팀	소관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전부개정)	일반 정비	- 문장 표현 등 일반정비 검토
	개정 권고	-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중복지원 금지 규정 신설 검토 - 「지방행정동우회법」과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전부개정 검토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적절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 조례 제2조에 따른 자치행정분야 활동지원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내용의 적정성	적정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조례의 공정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있으며,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현행 부합성	적정	-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 조례 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기타 의견	- 없음	

II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지방행정동우회법」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2조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2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0일간 입법예고 실시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은 물론 지방행정의 발전과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유지 필요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중복지원 금지 규정 신설 검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Ⅲ 세부 내용

조례명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회 지원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p>○ 최종의견 :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도정발전에 이바지함</p>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 공모를 통하여 ‘자치행정분야 활동지원 사업’ 을 실시함(2023년 예산: 8,460천 원) - (3-1) 제2조 “도지사는 전북행우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2023년 자치행정분야 활동지원 사업을 실시함 - (3-2) 제1조 목적에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도정발전이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지원대상이나 범위는 적절함 - (3-3)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확보된 예산을 집행함 	
■ 입법평가 종합의견 (전부개정)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p>○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1 참조 <p>○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의 지원 등의 규정을 통하여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회 지원을 위한 조례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사업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부수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움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회 지원 조례	전라남도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회원의 구분)	제3조(정관)	제3조(정관)
제4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사업)	제4조(회원의 구분)
제5조(준용)	제5조(지원사업)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의무)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사업)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재정)
	제8조(포상)		제8조(감독)
	제9조(시행규칙)		제9조(준용)

- 전라남도는 제8조에서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도록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 경기도는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여 재정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전라북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전라북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북도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회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3. “사무소”란 동우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정관) 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우회 설립 목적
2. 동우회 명칭
3. 동우회 사무소의 소재지
4. 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회원의 구분) ① 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1. 전라북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2. 전라북도 내 시·군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③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 내 시·군 소속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2.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라 명예회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의무) ① 동우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전라북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감독) ①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에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심층분석

- 2020.3.31.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어 사업과 지원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음. 「지방행정동우회법」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이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조례 전 부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행정동우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지방행정동우회법」
<p>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립) ①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동우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조(정관) 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p> <p>제4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직 공무원 및 동우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행정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동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우회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p> <p>제5조(조직 등) ① 동우회는 중앙회, 지회 및 분회를 둔다. ② 동우회의 중앙회와 중앙지회는 서울특별시에, 지회는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치시청·도청·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분회는 시청·군청·구청 소재지에 각각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③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p>

-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총회) ① 중앙회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지회장 및 분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지회 및 분회의 총회 구성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 지회장, 분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④ 회장은 회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회) ① 동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 ③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임원) ① 동우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사무총장 1명,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회장은 동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동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⑥ 감사는 동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제13조(사무 부서) ① 동우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무 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7168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우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행정동우회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전에 설립된 시·도행정동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행정동우회의 정관은 이 법에 따른 동우회의 정관으로 본다. 다만, 정관에 이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관을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행정동우회의 회원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행정동우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동우회의 임직원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 이후 제정된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회 지원 조례」의 전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전라북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전라북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북도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회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3. “사무소”란 동우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정관) 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우회 설립 목적
2. 동우회 명칭
3. 동우회 사무소의 소재지
4. 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회원의 구분) ① 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1. 전라북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2. 전라북도 내 시·군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 ③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 내 시·군 소속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2.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라 명예회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의무) ① 동우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전라북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감독) ①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에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참고자료 1 -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전라남도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제7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p>	<p>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p>	<p>제5조(의무) ①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동우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7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도지사가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 전라남도는 제8조에서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도록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 경기도는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여 재정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위원회 개최 현황

- 위원회 규정 없음

사업 예산집행내역

(단위 : 천 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정보화 확산을 위한 컴퓨터 교육	-	13,000	13,000	강사수당 812.5*8회*2명=13,000
2022	정보화 확산을 위한 컴퓨터 교육	-	13,000	13,000	강사수당 928*6회*2명=11,136 932*1회*2명=1,864
2023	정보화 확산을 위한 컴퓨터 교육	-	9,720	9,720	강사수당 110*10*7개월 30*10*7개월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회 지원 조례

[시행 2015. 5. 1.] [전라북도조례 제3979호, 2015. 5. 1., 일부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회(이하 “전북행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도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전북행우회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봉사활동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4.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전북행우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전북행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전라북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9. 4. 3, 2015. 5. 1>

— 03 —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I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례명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구분	위임조례	관계 법령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
제정·시행일	2016. 9. 30.	최근개정·시행일	2016. 9. 30./2016. 9. 30. (제정)
소관 부서	자치행정과 / 행정팀	소관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약칭 관련 문장 정비 검토 - 조례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정비 검토
	개정 권고	- 위원회 심의 사항에 관한 인용 조항 정비
	이행 권고	- 조례 제6조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원회 구성·운영 권고 필요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평화통일지원법」 제4조제3항을 근거로 하여 적절한 위임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북도 통일교육주간 기념식, 제5조에 따라 평화통일교육 시행계획 수립 등을 이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내용의 적정성	적정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없음
5. 주수용성	적정	-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현실부합성	적정	- 전라북도 도민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운영의 적정성	이행 권고	-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위원회 운영을 권고할 필요가 있음 - 음
※ 기타 의견	- 없음	

II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022~2024년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시행계획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4조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평화통일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교육 등의 실시, 위탁 임의 규정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6조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미구성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다수의 지자체에서 구성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성하지 아니하였고, 추후 위원회 구성 검토 중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전북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화를 위해 유지 필요 -통일 관련 의원 관심 증가 와 통일교육 활성화 촉구 요구로 유지 필요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III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p>○ 최종의견 : (8-1) 전북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와 통일 관련 의원 관심 증가, 통일교육 활성화 촉구 요구로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확인됨</p>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제3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 - (2-3) 조례에 따라 2022~2024년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시행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2023년 5개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수립할 예정임 - (2-4)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라북도 통일교육주간 기념식’ (2023년 예산: 12,000천 원)을 실시함 - (2-5) 조례 제16조에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고 하여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으므로 별도로 교육 기관 등을 지정한 바는 없음 - (3-3) 2023년 ‘전라북도 통일교육 주간 기념식’ 을 위하여 필요예산 12,000 천 원을 확보하였음 - (3-6) 조례 내 협조요청(제13조제1항),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제15조), 평화통일교육의 위탁 등(제16조), 포상(제18조) 규정을 두어 행정기관 재량권 범위를 적절히 두고 있음 - (7-1) 조례 제6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위원회를 두고 있음 - (7-2) 평화통일교육위원회는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임 - (7-3) 위원회의 위원은 구성되지 않아 성별 현황을 확인할 수 없음 - (7-5) 다수 지자체에서 위원회 구성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성하지 아니하였고, 추후 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음 	

■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이행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붙임1 참조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위원회 구성, 위탁 등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평화통일교육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기본이념 및 방 향)	제2조(정의)
제3조(기본방향)	제3조(평화·통일 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기본방향)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 수립)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평화통일교육계 획의 수립)	제5조(평화·통일 교육 시책의 수립·시행)	제2장 통일교육활성화 위원회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평화·통일 교육 의 위탁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통일교육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기관 설치·운 영)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8조(위원의 위촉 해 제)	제8조(시행규칙)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 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해촉)	제9조(재정지원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11조(회의)		제10조(회의)	제11조(포상)
제12조(간사)		제11조(간사)	제12조(규칙)
제13조(협조요청)		제12조(협조 요청)	
제14조(수당 등)		제13조(삭제 2017. 11. 2.)	
제15조(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제14조(삭제 2017. 11. 2.)	
제16조(평화통일교육의 위탁 등)		제15조(사회단체 통일교육의 활성화)	
제1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16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제18조(포상)		제17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제19조(시행규칙)		제1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19조(재정지원 등)	
		제20조(포상)	
		제21조(시행규칙)	

-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IV 개정의견

현행	개정 의견	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u>도민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u>전라북도민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약칭하지 않았으므로 원 명칭을 사용하도록 정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의 <u>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u>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의 제목(기본방향)까지 표기할 필요 없음
제5조(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u>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u> ② 평화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략 ③ 도지사는 제1항의 <u>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u>	제5조(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u>평화통일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u> ② 평화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의 <u>평화통일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u>	-제1항에서는 “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으로 사용하고 제2항 이하에서는 “평화통일교육계획”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제2항 이하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평화통일교육계획”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정비 -제3항의 “계획”은 약칭한바 없으므로 원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정비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u>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u>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자문이 끝나면 <u>자동으로 해산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약칭문 문장 부호 정비 -심의·자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규정 정비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공무원은 당연히 재직기간만 위촉되기 때문에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권고사항임-「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24, 226면)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평화통일교육계획”으로 용어 띄어쓰기 통일 -제5조제3항에서 수립하도록 한 시행계획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p>1. 제5조에 따른 <u>평화통일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p> <p>2. 제16조에 따른 <u>평화통일교육 활성화</u>를 위한 <u>계획 수립 및 지원 방안</u></p> <p>3. 생략</p>	<p>1. 제5조에 따른 <u>평화통일교육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p> <p>2. 제15조에 따른 <u>평화통일교육 활성화</u>를 위한 <u>시책 수립 및 지원 방안</u></p> <p>3. 현행과 같음</p>	<p>받도록 규정 정비 검토</p> <p>-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16조는 교육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고 활성화에 관해서는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제15조에서 수립하도록 한 내용은 “계획”이 아니고 “시책”이므로 “시책”을 수립하도록 정비 검토</p>
<p>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생략</p> <p>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그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u>제외될 수 있으며</u> 스스로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p>	<p>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그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u>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으며</u> 스스로 심의·조정을 <u>회피(回避)</u>할 수 있다.</p>	<p>-법조(法條)문장 정비</p> <p>-의미전달을 위해 한자병기</p>
<p>제14조(수당 등)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삭 제></p>	<p>-수당에 관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 적용되므로 규정의 실익 없음(법제처 권고사항 - 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94면)</p>
<p>제15조(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① 생략</p> <p>②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u>기관 또는 단체</u>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15조(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p> <p>②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u>기관 또는 법인·단체</u>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법조(法條)문장 정비</p> <p>-제16조와 일치된 표현으로 수정</p>
<p>제1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u>관련기관, 단체</u>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p>	<p>제1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u>기관 또는 법인·단체</u>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p>	<p>-법조(法條)문장 정비</p> <p>-제16조와 일치된 표현으로 수정</p>
<p>제18조(포상)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p>	<p><삭 제></p>	<p>-포상에 관한 「전라북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 적용되므로 규정의 실익 없음(법제처 권고사항 - 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13면)</p>
<p>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u>규칙으로 정한다.</u></p>	<p><삭 제></p>	<p>-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p>

※ 심층분석

- 이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에게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실제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권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①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을 정비하거나, ② 심의·자문이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하거나, ③ 유사한 위원회가 그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대행 규정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 경우, 5년마다 계획 수립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유사한 위원회가 전라북도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② 심의·자문이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이하 생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자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이하 현행과 같음	-약칭문 문장 부호 정비 -심의·자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규정 정비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위원회 개최 현황

- 위원회 미 구성

사업 및 예산 관련

(단위 :천 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3	전라북도 통일교육주간 기념식	12,000	12,000	-	-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6. 9. 30.] [전라북도조례 제4324호, 2016. 9. 30., 제정]

전라북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도민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 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 평화통일 교육은 도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민족공동체 의식과 평화문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7·4남북공동성명,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및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실현
5.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
6. 지역사회 통일 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평화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8. 평화통일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2장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행정부지사와 담당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명 내외

3. 평화통일 분야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5명 내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그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스스로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한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평화통일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3조(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제15조(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평화통일교육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평화통일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18조(포상)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04 —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I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례명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20. 8. 14.	최근개정·시행일	2020. 8. 14./2020. 8. 14. (제정)
소관 부서	방호예방과 / 현장조사분석팀	소관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집행부에서 안심하우스, 긴급생활비지원과 같은 신규 사업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이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개정안 마련을 검토함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 조례 제5조에 따른 관련 사업 시행, 제6조에 따른 유관기관 협력 지원 등을 이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내용의 적정성	적정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대상의 범위가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 조례 제개정 시 입법 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현실 부합성	적정	-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적정	- 조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임
※ 기타 의견	- 없음	

II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5조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기관교류(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15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7조~제10조, 제16조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020. 7. 9. ~ 7. 14. (5일간)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11조~제14조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행복하우스 지원사업 등은 지원 금액이 큰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공정하게 결정하는데 필요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 -재난(화재)을 당한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신규 사업(안심하우스, 긴급 생활비 지원)을 조례에 반영 할 필요 있음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붙임1 참조

III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p>○ 최종의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고, 재난(화재)을 당한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8-2) 조례 내 안심하우스, 긴급생활비지원과 같은 신규사업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 인정됨 - (8-4)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지방규제혁신과)에서 2021년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음(조례 제정 지원으로 화재피해주민 지원 및 보호 강화), 국가(국회) 및 타 시·도에서 본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법률」 및 「조례」가 지정되고 있음[「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21.4.15., 오영환 국회의원 대표발의)/조례를 벤치마킹 한 시·도: 경기도(2023.7.) 강원도(2023.6.), 대전광역시(2023.1.), 전라남도(2022.12.), 부산광역시(2022.10.), 광주광역시(2021.9.), 충청남도(2021.7.), 울산광역시(2021.3.)].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음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2020.11.13.),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음 :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계획(종합계획)/화재피해주민 심리회복 지원계획/119행복하우스 건축 지원계획/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지원 계획/119안심하우스 건축 지원계획/주택화재피해자 긴급 생활비 지원계획 - (2-4) 조례 제5조에 따라 심리회복 지원(비예산),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비예산(기금)), 임시거처 지원(7,500천 원), 안심하우스(비예산, 기금), 긴급 생활비 지원(비예산, 기금) 사업이 실시됨 	

- (2-5) 2023년 8월 말 기준 ① 심리회복 지원(2021년 136건, 2022년 286건, 2023년 153건), ② 행복하우스 지원(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0건), ③ 임시거처 비용지원(2021년 11건, 2022년 34건, 2023년 22건), ④ 안심하우스 지원(2022년 1건, 2023년 3건), ⑤ 긴급 생활비 지원(2022년 22건, 2023년 13건)이 실시됨
- (2-5) 조례 제6조에 따라 행복하우스, 안심하우스, 긴급생활비지원 등을 위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업무협약, 위기아동 지원을 위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KT&G 전북지사와 업무협약을 하여 유관기관 협력 지원을 받음
- (3-1) 조례 제15조에 따라 임시거처 비용지원으로 도비 7,500천 원을 지원하였음. 또한 2017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기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행복하우스 기금으로 335,475,000원이 모였으며, 99,268,240원이 남음. 그리고 2021년 12월부터 도내 기업 및 단체로부터 기금을 마련하여 82,000,000원이 모였으며, 46,050,000원이 남음
- (3-2)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의 조화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책무인 이재민 보호를 수행하고, 주택신축 및 수리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실시하여 자립을 돕고 있음
- (3-3) 임시거처를 위하여 2021~2023년 동안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조례 시행에 수반되는 예산 미확보 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의 자율적 모금과 도내기업 및 단체의 후원금으로 행복하우스, 안심하우스, 긴급 생활비를 지원함
- (3-4) 조례 제7조에서 제10조에 지원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 임시거처 지원 기간(최대 5일), 한도금액(공무원 여비 규정의 숙박비)을 정하고 있음. 또한 제16조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3-6)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대상을 화재피해주

민 중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한 주민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법으로 모든 지원 대상을 규정할 경우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발생하여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보완책으로 마련한 규정으로, 지원 결정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므로 행정기관의 재량권은 일정한 한계가 있음

- (7-1) 조례 제11조부터 제14조에 따라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7-4) 위원회 개최 관련하여 연도별 개최건수, 개최일, 소요예산 등 회의 관련 실적을 보존하고 있음

연도별	2021	2022	2023
개최건수	1	4	2
개최일	5.6.	4.8./5.18./ 12.16./12.26.	6.1./8.22.
소요예산	280천 원	560천 원	0원

- (7-5) 위원회는 행복하우스 지원사업 등 지원금액이 큰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 범위를 공정하게 결정하는 데 필요하므로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됨

■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붙임1 참조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는 등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심리회복 지원,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임시거처 지원 등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 화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도민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범위)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전라북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의 종류)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의 종류 및 신청)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제6조(생계 지원)	제6조(심리회복 지원)
제7조(지원신청)	제7조(심리회복 지원)	제7조(주거 지원)	제7조(임시거처 지원)
제8조(심리회복 지원)	제8조(임시거처 제공 등)	제8조(주택 복구 지원)	제8조(생활안정자금 지원)
제9조(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제9조(지원신청)	제9조(심리회복 지원)	제9조(중복 지원 제한)
제10조(임시거처 지원)	제10조(화재피해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삭제)
제11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삭제)
제13조(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등)	제13조(위원의 제척·기 피·회피)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수당)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5조(재원)	제15조(분쟁조정 신청)	제15조(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조정외 거부 및 중지)	제16조(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제17조(조사 등)		
	제18조(조정외 성립)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20조(수당)		
	제21조(시행세칙)		

-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IV 개정의견

현행	개정 의견	이유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화재피해주민”이란 <u>전라북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에 주소를 둔 주민 (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말한다.</u></p> <p>2. “<u>유관기관 협력 지원</u>”이란 <u>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을 구축하여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u></p> <p>3. ~ 4. 생략</p> <p><신 설></p> <p>② 생략</p>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화재피해주민”이란 <u>전라북도 내(이하 “도 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에 주소를 둔 주민 (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말한다.</u></p> <p><삭 제></p> <p>3. ~ 4. 현행과 같음</p> <p>5. “<u>안심하우스</u>”란 <u>화재로 주택이 부분 소실된 사회적 취약계층에 거주할 수 있도록 보수하여 주는 주택을 말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띄어쓰기 정비</p> <p>-“유관기관 협력 지원”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모두가 알 수 있는 사항을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법제처 권고사항- 「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88면)</p> <p>-제5호 신설 -“안심하우스” 집행내역이 있고, 실제 위원회에서 “안심하우스”에 관한 심의가 있으니 이를 반영한 정의가 필요함</p>
<p>제4조(전라북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u>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4조(전라북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u>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간결·명료하게 정비</p>
<p>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p>1. 심리회복 지원</p> <p>2.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p> <p><신 설></p> <p>3. 임시거처 지원</p> <p><신 설></p> <p>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p>	<p>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p>1. 심리회복 지원</p> <p>2.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p> <p>2의2. <u>안심하우스 건축 지원</u></p> <p>3. 임시거처 지원</p> <p>3의2. <u>긴급생활비 지원</u></p> <p>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례 정비 검토</p> <p>-문장정비</p>
<p>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u>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p>	<p>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u>기관·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p>	<p>-기관·법인·단체로 수정하는 것이 법조(法條) 문장임</p>

<p>제7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해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이장·통장·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7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이장·통장·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p>	<p>-인용 표현 방식 정비 검토</p>
<p>제9조(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행복하우스_건축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p>	<p>제9조(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제5조제2호에 따른 행복하우스 및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안심하우스 건축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p>	<p>-제2조제5호 신설에 따른 정비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례 정비 검토 -법조(法條)문장정비</p>
<p>제11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행복하우스_건축지원 및 그 밖에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_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제11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행복하우스, _안심하우스, 긴급생활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제2조제5호 신설에 따른 제1항에 안심하우스 및 화재피해주민에게 필요한 긴급생활비 지원 추가 -정확한 명칭 및 약칭표기(“심의위원회” → “위원회”가 적절함. 당연히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 삭제가 바람직 함)</p>
<p>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위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제11조 약칭에 따라 “심의위원회” → “위원회”로 명칭변경</p>

<p>⑤ <u>심의위원회의</u>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u>심의위원회</u>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p>	<p>⑤ <u>위원회</u>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u>위원회</u>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p>	
<p>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심의위원회의</u>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u>그 밖의</u>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p>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u>심의위원회</u>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p> <p>③ 생략</p>	<p>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위원회</u>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u>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p>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u>위원회</u>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 약칭에 따라 “<u>심의위원회</u>”→ “<u>위원회</u>”로 명칭변경</p> <p>-'그 밖이'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그 밖의'를 쓰고, 뒤에 오는 서술어와 호응하는 경우 '그 밖에'를 사용함</p>
<p>제14조(수당) <u>심의위원회</u> 위원 중 민간위원에게는 「<u>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 안건 심사수당 및 그 밖에 <u>심의위원회의</u>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삭 제></p>	<p>-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은 “수당”에 대하여 「<u>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에서 정한 수당 규정(제15조)이 자동 적용되므로 규정의 실익 없음(법제처 권고사항임- 「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94면)</p>
<p>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p>-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권고</p>

※ 심층분석

- 집행부에서 조례 내 안심하우스, 긴급생활비지원과 같은 신규 사업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이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개정안 마련을 검토함
- 안심하우스, 긴급생활비지원과 같은 신규 사업의 집행 근거 마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례에 반영하도록 안 제시

현행	개정 의견	이유
<p>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회복 지원 2.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임시거처 지원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p>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회복 지원 2.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p><u>2의2. 안심하우스 건축 지원</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임시거처 지원 <p><u>3의2. 긴급생활비 지원</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p>-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례 정비 검토</p>
<p>제9조(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u>행복하우스</u> 건축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2. 화재피해주민 중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한 주민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u>행복하우스</u> 건축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u>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u>를 열어 지원 여부 및 <u>지원 범위</u> 등을 결정할 수 있다.</p>	<p>제9조(행복하우스 등 건축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u>제5조제2호에 따른 행복하우스 및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안심하우스</u> 건축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2. 화재피해주민 중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한 주민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u>위원회를</u> 열어 지원 여부 및 <u>범위</u> 등을 결정할 수 있다.</p>	<p>-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례 정비 검토</p> <p>-법조(法條)문장 정비</p>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위원회 개최 현황

연도별	2021	2022	2023
개최건수	1	4	2
개최일	5.6.	4.8./5.18./ 12.16./12.26.	6.1./8.22.
소요예산	280천 원	560천 원	0원

- 2022년 이전에는 민간위원 1인당 7만 원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민간위원도 지급하지 않음

시행계획 관련 목록

-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20. 11. 13.
- 시행계획 수립(매년 수립)
 - 1)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계획(종합계획)
 - 2) 화재피해주민 심리회복 지원계획
 - 3)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계획
 - 4)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지원 계획
 - 5) 안심하우스 건축 지원계획
 - 6) 주택화재피해자 긴급 생활비 지원계획

조례 관련 집행부 별도 의견

- 행정안전부(지방규제혁신과)에서
 - 2021년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됨
 - 사례명: 조례제정 지원으로 화재피해주민 지원 및 보호 강화
- 국가(국회) 및 타 시·도에서 본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법률, 조례가 제정되고 있음

-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21.4.15., 오영환 국회의원 대표발의)

- 조례를 벤치마킹 한 시·도: 경기도(2023.7.) 강원도(2023.6.), 대전광역시(2023.1.),
전라남도(2022.12.), 부산광역시(2022.10.), 광주광역시(2021.9.), 충청남도(2021.7.),
울산광역시(2021.3.)

○ 행정안전부, 2022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 전라북도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부상 특교세 1억 원)

- 사례명: 화재로 인한 아픔, 안심하우스 지원으로 포용하다(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 사업명 및 예산집행내역

(단위 : 천 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임시거처	7,500	7,500	3,069	11세대 지원
	행복하우스	-	-	55,000	1세대 지원
2022	임시거처	7,500	7,500	7,440	34세대 지원
	행복하우스	-	-	50,000	1세대 지원
	안심하우스	-	-	7,300	1세대 지원
	긴급생활비	-	-	11,000	22세대 지원
2023	임시거처	7,500	7,500	5,480	22세대 지원
	행복하우스	-	-	-	지원대상 없음
	안심하우스	-	-	50,550	4세대 지원
	긴급생활비	-	-	6,500	13세대 지원

- 행복하우스, 안심하우스, 긴급생활비 : 비예산(기금)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8. 14.] [전라북도조례 제4804호, 2020. 8. 14., 제정]

전라북도(소방본부 방호예방과), 063-280-387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전라북도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에 주소를 둔 주민 (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유관기관 협력 지원”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을 구축하여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주민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또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으로서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행복하우스”란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새로이 지어주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소방기본법」, 「재해구호법」,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전라북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관기관 협력 지원에 참여하는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3. 임시거처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해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이장·통장·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심리회복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2. 화재피해주민 중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한 주민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임시거처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처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5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대 구성원이 3명 이상이면 위에 정한 금액의 2배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거처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및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전라북도 소방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라북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
2. 소방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사무관
3.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남성회장
4.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여성회장
5. 화재피해주민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소방서 직원
6. 주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시·군 공무원
7.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
8. 그 밖에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등을 위해 기부한 개인 및 민간기업·단체의 임직원

④ 위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화재피해주민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화재피해주민과 같은 법인, 단체 및 마을 등에 속하거나 최근 2년 전까지 속하였던 경우

3.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 안전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원)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필요 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05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I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례명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6. 7. 8.	최근개정·시행일	2016. 7. 8./2016. 7. 8. (제정)
소관 부서	대외협력과 / 민간지원팀	소관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통폐합)	일반 정비	- 약칭 정비
	통합 권고	- 제4조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이 수립되지 아 니함. 계획 수립 권고 필요 -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내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민간 협력체계 구축 등 유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조례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심층분석을 통해 통합 가능성 검토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적절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개정	-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과 자 원봉사활동 범위가 유사하여 충돌이 발생함
3. 조례내용의 적정성	개정	- 조례에 재정지원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예산을 확보하 여 집행한 내역이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주수용 민성	적정	-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현실 부합성	적정	- 전라북도민의 재능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운영의 적정성	-	- 조례 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기타 의견	- 없음	

II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유사 업무 포함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미 수립 -기존 재능기부 단체 고유 업무와 유사하여 본 조례 시행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 결여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기존 재능기부 단체(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등)고유업무와 유사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유사 조례 통·폐합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Ⅲ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p>○ 최종의견 : (8-1) 본 조례는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등과 같은 기존 재능기부 단체의 고유업무와 유사하여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음</p> <p>- (8-2) 본 조례는 다른 조례와 상충 및 모순되며, 본 조례와 유사 조례와 통·폐합할 필요가 있어 개정 이유가 확인됨</p> <p>○ 내용</p> <p>- (2-1)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과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유사하여 다른 조례와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함</p> <p>- (2-2)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내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유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조례의 통합이 필요함</p> <p>- (2-3) 기존 재능기부 단체 고유 업무와 유사하여 본 조례 시행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결여되어 조례에 따른 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음</p>	
■ 입법평가 종합의견	(통폐합) 일반 정비 / 통합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p>○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p> <p>- 붙임1 참조</p>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도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추진계획 수립, 활성화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을 추진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행 권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부수효과

- 추진계획 수립 내용, 사업 시행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수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움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부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제6조(포상)	제6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등)
제7조(포상)	제7조(재정지원)	제7조(시행규칙)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제9조(시행규칙)

-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IV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민</u> 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전라북도민</u> 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칭 없이 사용한 “도민” 용어 정비
제3조(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u>도민</u> 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조(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u>전라북도민</u> (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도민” 약칭 추가

※ 심층분석

-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내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유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조례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집행부 의견에 따라 심층분석을 통해 통합 가능성 검토함
- 지방자치단체 중 재능기부 활성화를 별도의 조례로 두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전라북도를 포함하여 66개임. 그 중 광역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음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두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목록	
1	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2	대전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3	부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4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5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7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위임조례이며,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는 자치조례이므로 양 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조례인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먼저 양 조례의 구성체계를 살펴봄
-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이 조례의 구성체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제1조(목적)
제3조(책무)	제2조(용어의 정의)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재정지원)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제7조(포상)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6조의2(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7조(센터의 사업)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9조(센터의 지원)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12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제14조(포상 및 보상 등)
	제14조의2(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
	제15조(경력 인정 등)
	제16조(보험가입)
	제17조(실비지급)
	제18조(시행규칙)

- 양 조례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재능기부는 폭넓게 살펴보면 자원봉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어 보임
-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통합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함

□ 참고자료 1 -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을 통해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12, 2021.6.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12, 2021.6.10.>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2006. 10. 13, 2015. 10. 12>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2006. 10. 13, 2015. 10. 12, 2021.6.10.>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2006. 10. 13, 2015. 10. 12>
4. <삭제 2006. 10. 13>
5.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2006. 10. 13, 2015. 10. 12, 2021.6.10.>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6.10.>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개정2006. 10. 13>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1.6.10.>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2006. 10. 13>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의결<개정 2021.6.10.,2022.11.4.>
- ③ 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6.10.>
-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6.10.>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2006. 10. 13, 2021.6.10.>

제6조의2(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21.6.10.>

② 센터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2006. 10. 13, 2015. 10. 12>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6. 10. 13, 2021.6.10.>

1. 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군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7.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11. 4.>
-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1.6.10.>
- ④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개정 2021.6.10.>
-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개정 2015. 10. 12, 2021.6.10.>
- ⑦ 삭제<2021.6.11.>

제9조(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6. 10. 13>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 10. 12, 2021.6.10.>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1.6.10.>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3, 2015. 10. 12>

제12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개정2006. 10. 13>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도지사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도지사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2>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개정 2006. 10. 13>

제14조(포상 및 보상 등) ① 도지사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3, 2015. 10. 12>

②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적인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가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우대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5. 10. 12>

제14조의2(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와 전라북도 내 시·군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전라북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이상의 마일리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가능 공공시설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1.6.10.]

제15조(경력 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3>

제16조(보험가입) 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3, 2021.6.10.>

② 도지사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03. 10. 13, 2021.6.10.>

제17조(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위원회 및 예산집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위원회 및 집행내역 없음)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시행 2016. 7. 8.] [전라북도조례 제4302호, 2016. 7. 8., 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재능기부를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력적 도민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민간단체 및 전문 기관과의 재능기부 네트워크 구축
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06

전라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I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례명	전라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구분	위임조례	관계 법령	「수도법」 제15조
제정·시행일	2020. 5. 29.	최근개정·시행일	2020. 5. 29./2020. 5. 29. (제정)
소관 부서	물통합관리과 / 상하수도팀	소관 상임위	환경복지위원회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목적조항에 「수도법」 제15조의 위임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정비 검토 - 약칭문 띄어쓰기 정비 검토
	개정 권고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물절약전문업에 대한 이용 권장 관련 규정 신설을 검토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수도법」 제15조를 근거로 적절한 위임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 조례 제5조에 따라 실태조사 시행 등을 이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내용의 적정성	개정	- 조례에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재정지원을 한 실적은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현행실정 부합성	적정	- 전라북도의 수도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 조례 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기타 의견	- 없음	

II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수도법」 제15조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위임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시·군 수요조사 실시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5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재정지원실적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5조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20호 2020.1.23.~30.(8일간)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조례 시행 초기단계로 현행대로 유지 이후 추후 개정 등 검토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규정 신설 검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III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p>○ 최종의견 : (8-1) 조례 시행 초기단계로 현행대로 유지하여 이후 추후 개정 등 검토가 필요함</p>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수도법 제15조에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 - (2-5)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절수설비 지원 대상을 조사하였으며, 2023년 6월 시·군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음 - (3-1) 조례 제5조에 “도지사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지원 실적은 없음 - (3-2) 조례 제5조제2항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원대상이나 범위가 적정함 - (3-4) 건물의 용도별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있음 - (5-4) 조례의 체계 및 용어는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명시되어 있음 - (6-1) 조례 제·개정 이후 3년 4개월이 경과하였으며,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정되어 있음 	
■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p>○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없음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지원이 없어 현재 상태에서 조례의 목적달성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 부수효과

- 조례에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재정지원 실적이 없어 부수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움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
제7조(시행규칙)	제7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제7조(물절약전문업 지원)	
	제8조(시행규칙)	제8조(포상)	
		제9조(시행규칙)	

- 경상남도 및 대구광역시는 각각 제7조에서 「수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에 대한 이용 권장을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의 사항은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IV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조항에 「수도법」 제15조의 위임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정비 검토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도지사는 「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는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도지사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는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약칭문 띄어쓰기 정비 검토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이나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수도법」 제15조제1항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 -단어 중복을 최소화하여 자연스럽게 문장 정비
<신 설>	제6조의2(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도지사는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수도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용역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 2.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사업 3.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연구사업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물절약전문업에 대한 이용 권장 관련 규정 신설 검토

<p>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p>-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p>
--	--------------------	--

※ 심층분석

- 특별한 심층분석 사유가 없음.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권고함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위원회 개최 현황 및 사업 관련

- 위원회 및 사업추진실적 없음

전라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 29.] [전라북도조례 제4771호, 2020. 5. 29., 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도지사는 「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는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건축물
2. 공동주택
3. 사회복지시설
4. 마을회관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07 —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I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례명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조례 구분	위임조례	관계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제정·시행일	2004. 11. 12.	최근개정·시행일	2020. 12. 11./2020. 12. 11. (일부개정 6회)
소관 부서	생활환경과 / 미세먼지대응팀	소관 상임위	환경복지위원회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인용 법령 표기 방식 정비 검토
	개정 권고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 정비 검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정비 검토)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단속 절차, 공회전 제한 권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심층분석을 통해 제시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을 근거로 하여 적절한 위임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 조례에서 실시하도록 한 홍보 및 계도가 잘 이행되고 있음
3. 조례내용의 적정성	-	- 조례 내 재정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현실 부합성	적정	- 전라북도의 대기환경을 위하여 일정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 조례 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기타 의견	- 없음	

II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대기환경보전법」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별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7조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020.11.2. ~ 11. 7. (5일간)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p>-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공회전을 제한 필요</p> <p>-공회전 제한지역 등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있음</p>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p>-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p> <p>-권고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p>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III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p>○ 최종의견 : (8-2) 법률의 과태료 사항 조항이 변동되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p>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제1항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었음 - (1-5) 조례 제7조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어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및 규제 사항을 두고 있음.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5호로부터 위임되었음 - (5-2) 조례 제·개정 시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 의견을 서면, 우편을 통해 수렴함 - (6-1) 본 조례는 제·개정 이후 2년 10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하고 있음 	
■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p>○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없음 <p>○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제한, 적용 제외 대상 등을 규정·운영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자동차 공회전을 방지함으로써 전라북도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제3조(제한장소 등)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제3조(제한장소 지정 등)
제3조의2(공회전의 제한)	제4조(제한시간)	제4조(공회전의 제한)	제4조(제한시간)
제4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5조(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	제5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5조(적용대상)
제5조(공회전 단속요원 임명)	제6조(공회전 제한장치의 부착 등)	제6조(단속공무원)	제6조(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
제6조(공회전의 단속)	제7조(단속공무원)	제7조(공회전의 단속)	제7조(공회전 단속방법)
제7조(과태료부과)	제8조(단속방법)	제8조(홍보 및 계도)	제8조(홍보 및 계도)
제8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제9조(홍보 및 계도)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제9조(권한의 위임)	제10조(과태료의 부과 등)		제10조(권한의 위임)

-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IV 개정의견

현행	개정 의견	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u>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u>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u>교육환경보호구역</u>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보건법」상 규정하고 있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관한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됨.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원동기”란 법 제2조13의제2호에 따른 원동기를 말한다. 7. “터미널”이란 「 <u>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u> 」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8. “차고지”란 「 <u>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u> 」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 <u>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u> 」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를 말한다. 9. ~ 10. 생략 11. “자동차극장”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별표1 제2호나목의 규정</u> 에 따른 야외영화상영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6. “원동기”란 법 제2조제13호의2에 따른 원동기를 말한다. 7. “터미널”이란 「 <u>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u> 」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8. “차고지”란 「 <u>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u> 」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 <u>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u> 」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차고지를 말한다. 9. ~ 10. 현행과 같음 11. “자동차극장”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별표 1 제2호나목</u> 에 따른 야외영화상영관을 말한다.	-제6호: 가지조문 인용 방식에 맞게 정비 검토 -제7호: 인용 법령 제명 띄어쓰기 정비 -제8호: 공영차고지에 대한 사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음(인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인용 법령 제명 띄어쓰기 정비, 조항 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 -제11호: 조항 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용어와 같도록 “대규모점포”로 띄어쓰기 정비 -조항 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 -약칭 없이 “도”를 사용하지 않도록 용어 정비

<p>1. ~ 5. 생략</p> <p>6.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u>대규모 점포</u> 나. ~ 라.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단속개시일 10일 전까지 공보 및 <u>도 홈페이지</u>에 고시해야 한다.</p> <p>③ 생략</p>	<p>1. ~ 5. 현행과 같음</p> <p>6.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u>대규모점포</u> 나. ~ 라.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단속개시일 10일 전까지 공보 및 <u>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홈페이지</u>에 고시해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공회전 단속요원 임명) ① 도지사는 <u>당해</u>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원을 포함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회전 단속담당요원(이하 “단속담당요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단속담당요원이 단속활동에 임할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회전 단속요원증을 가지고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p>	<p>제5조(공회전 단속요원 임명) ① 도지사는 <u>해당</u>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원을 포함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회전 단속담당요원(이하 “단속담당요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단속담당요원이 단속활동에 임할 시는 <u>별지 제1호 서식</u>의 공회전 단속요원증을 가지고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p>	<p>-“당해”를 “해당”으로 정비 -약칭문 띄어쓰기 정비 -띄어쓰기 정비 -불필요한 문장부호 삭제 검토</p>
<p>제6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요원은 가급적 계도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여야 한다.</p> <p>② 단속담당요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1차 경고장을 붙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여야 한다.</p> <p>③ 부득이 <u>단속하고자 할때는</u>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시를 대상 자동차 앞면에 부착하여 단속된 차량임을 운전자가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6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요원은 가급적 계도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여야 한다.</p> <p>② 단속담당요원은 <u>별지 제2호 서식</u>의 1차 경고장을 붙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여야 한다.</p> <p>③ 부득이 <u>단속하는 경우</u> <u>별지 제3호서식</u>의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시를 대상 자동차 앞면에 부착하여 단속된 차량임을 운전자가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불필요한 문장 부호 삭제 검토 -심층분석을 통해 공회전 단속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정비 검토 -띄어쓰기 정비</p>
<p>제7조(과태료부과) 법 제94조제5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제7조(과태료 부과) 법 제94조제4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p>	<p>-「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5항은 각 호가 없음. 과태료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음</p>

※ 심층분석

- 공회전 단속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검토
- 타 시·도의 단속 규정의 사례를 살펴봄

조례 제명	규정내용
<p>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시행 2020. 12. 11.] [전라북도조례 제4857호, 2020. 12. 11., 일부개정]</p>	<p>제6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요원은 가급적 계도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여야 한다. ② 단속담당요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1차 경고장을 붙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 단속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시를 대상 자동차 앞면에 부착하여 단속된 차량임을 운전자가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1.> ④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시를 부착한 때에는 단속대장에 등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1.></p>
<p>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시행 2019. 7. 11.] [경상남도조례 제4609호, 2019. 7. 11., 일부개정]</p>	<p>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공회전 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고 그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03., 2015.12.17.> ② 단속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8.07.03., 2015.12.17.> ③ 단속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4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우 2명 이상의 단속공무원이 연서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p>
<p>전라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2. 23.] [전라남도조례 제5475호, 2021. 12. 23., 일부개정]</p>	<p>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제1항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하고, 제1항에 따른 경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4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1부를 자동차 운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없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표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고 차량소유자에게 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7. 9. 28.)</p>

<p>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 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549호, 2016. 1. 11., 일부개정]</p>	<p>제6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을 단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이 제4조에 따른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고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 등)를 확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하여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자동차에 부착하고 차량소유자에게 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p>
<p>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5. 30.] [충청남도조례 제4518호, 2019. 5. 30., 일부개정]</p>	<p>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가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회전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비디오 테이프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당해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③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우 2인 이상의 단속공무원이 연서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p>
<p>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8. 6.] [충청북도조례 제4614호, 2021. 8. 6., 일부개정]</p>	<p>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가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2021.2.10.>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공회전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에 따라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비디오 테이프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2021.2.10.> ③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4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우 2인 이상의 단속공무원이 연서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2021.2.10.></p>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의견을 제시함

현행	개정 의견	이유
<p>제6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요원은 가급적 계도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여야 한다.</p> <p>② 단속담당요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1차 경고장을 붙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여야 한다.</p> <p>③ 부득이 단속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시를 대상 자동차 앞면에 부착하여 단속된 차량임을 운전자가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1.></p> <p>④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시를 부착한 때에는 단속대장에 등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1.></p>	<p>제6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요원이 제한지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가 공회전 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p> <p>② 단속담당요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1차 경고장을 붙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여야 한다.</p> <p>③ 단속담당요원은 제1항에 따라 공회전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3조의2에 따라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비디오테이프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를 대상 자동차 앞면에 부착하여 단속된 차량임을 운전자가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④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시를 부착한 때에는 단속대장에 등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p>	<p>-타 시·도의 사례를 참조하여 공회전의 단속에 관한 규정 개정 검토</p>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위원회 개최 현황

- 위원회 개최 및 예산집행내역 없음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시행 2020. 12. 11.] [전라북도조례 제4857호, 2020. 12. 11., 일부개정]

전라북도(자연생태과), 063-280-418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5. 12.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4.3., 2011.11.11., 2015.12.11., 2020.12.11.>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주차”란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 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4. “정차”란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5.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6. “원동기”란 법 제2조13의제2호에 따른 원동기를 말한다.
7.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8. “차고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를 말한다.
9.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0.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말한다.
11. “자동차극장”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야외영화상영관을 말한다.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터미널
 2. 차고지
 3. 주차장
 4. 교육환경보호구역
 5. 자동차극장
 6.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지역
 -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단속개시일 10일 전까지 공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누구나 쉽게 해당 지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11.]

[제목개정 2020.12.11.]

제3조의2(공회전의 제한) 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이거나 섭씨 5도 미만인 경우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의 제2종 저공해자동차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섭씨 0도 이하이거나 섭씨 30도 이상일 때는 공회전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12.11.]

제4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하나와 같다.<개정 2015.12.11., 2020.12.11.>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 이하인 경우로서 10분 이내에 한한다.
5. 영 제1조의2 제1호의 제1종 저공해자동차
6.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제5조(공회전 단속요원 임명) ① 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회전 단속담당요원(이하 “단속담당요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5. 12. 11>

② 도지사는 단속담당요원이 단속활동에 임할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회전 단속요원증을 가지고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1>

제6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요원은 가급적 계도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여야 한다.

② 단속담당요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1차 경고장을 붙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 단속하고자 할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시를 대상 자동차 앞면에 부착하여 단속된 차량임을 운전자가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1>

④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시를 부착한 때에는 단속대장에 등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1>

제7조(과태료부과) 법 제94조제5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 11. 11, 2014. 6. 27, 2015. 12. 11>

제8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1>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 11. 12>

1. 조례 제3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의 설치<신설 2015. 12. 11>
2. 조례 제5조에 따른 단속담당요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개정 2015. 12. 11>
3. 조례 제6조에 따른 공회전 단속업무<개정 2015. 12. 11>
4. 조례 제7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업무<개정 2015. 12. 11>

— 08 —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I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례명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조례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8. 2. 2.	최근개정·시행일	2018. 2. 2./2018. 2. 2. (제정)
소관 부서	노인복지과 / 노인정책팀	소관 상임위	환경복지위원회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한 문장 표현 정비 검토 - “고령친화도시는 각 시·군에 맞는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집행부 의견이 제시됨. 이에 대하여 심층분석을 통해 정비 검토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적절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 실시 등을 이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내용의 적정성	적정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음
4. 조례의 공정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현행실정 부합성	적정	- 전라북도 내 시·군의 고령친화도시를 지원함으로써 도내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 조례 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기타 의견	- 없음	

II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제시하기 어려움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7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018.1.5. ~1.10(5일간)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도 단위에서 지원을 위해 조례 유지 필요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평성 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의견 : 붙임1 참조

III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p>○ 최종의견 : (8-1)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도 단위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p> <p>- (8-4) 고령친화도시는 각 시·군에 맞는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타 시·도의 경우 현재는 도 단위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도 단위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곳은 거의 없음. 향후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p> <p>○ 내용</p> <p>- (1-1) 「노인복지법」 제8조 및 제27조의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었음</p> <p>- (2-3) 조례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제시하기 어려움. 다만, 전북연구원에서 고령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음. 타 시도 역시 조례를 제정하고 대부분의 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p> <p>- (2-4) 조례 제7조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을 지원하였음</p> <p>- (3-1) 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음[노인건강진단사업(예산: 46,667천 원)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예산: 3,897,952천 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예산: 51,023,570천 원) / 전라북도 노인복지관운영지원(예산: 749,687천 원) /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예산: 717,696천 원) / 노인 무료양로시설 지원(예산: 5,938,630천 원) / 고령화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구축사업(예산: 140,000천 원)]</p> <p>- (3-3)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음</p>	

■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붙임1 참조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고령친화영향평가, 재정지원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운영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노인건강진단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복지관운영지원 등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어 전라북도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기본이념)	제2조(정의)	제2조(기본이념)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정의)
제4조(계획)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계획수립)	제4조(책무)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제5조(법령 등과의 관 계)
제6조(고령친화영향평 가)	제6조(연도별 시행계 획 수립)	제6조(고령친화영향평 가)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건강증진)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시행계획 수립· 시행)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노인실태조사)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실태조사)
제9조(협력체계의 구 축)	제9조(사회·문화활동 의 장려)	제9조(협력체계의 구 축)	제9조(건강증진)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고용촉진 및 소득 지원)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사회활동 참여 의 장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고령자 의무고용)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2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제12조(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
	제13조(생업지원)		제13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제14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4조(생업지원)
	제15조(노인복지주택의 공급)		제15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6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제16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제17조(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제17조(노인친화공원 조성 등)
	제18조(경로우대)		제18조(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제18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19조(경로우대)
	제19조(노인학대 예방)		제20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19조의2(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제21조(노인학대 예방)
	제20조(노인자살 예방)		제22조(노인자살 예방)
	제21조(노인의 날 행사)		제23조(노인관련 행사 등)
	제22조(표창)		제24조(표창 등)
	제23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2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24조(고령친화도 평가제 및 고령친화영향평가)		제26조(고령친화도 평가)
	제25조(조사 및 연구)		제27조(조사 및 연구)
	제26조(국제교류의 활성화)		제28조(국제교류의 활성화)
	제27조(교육 및 홍보)		제29조(교육 및 홍보)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3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9조(노인정책센터 설치·운영)		제31조(설치 및 기능)
	제30조(설치 및 기능)		제32조(구성)
	제31조(구성)		제33조(위원의 임기)
	제32조(위원의 임기)		제34조(해촉)

	제33조(위촉해제)		제3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5조(회의)		제37조(회의)
	제36조(의견청취 등)		제38조(의견청취 등)
	제37조(운영세칙)		제39조(수당 등)
	제38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0조(간사)
	제39조(업무의 협조)		제41조(운영세칙)
	제40조(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보)		제42조(업무의 협조)
	제41조(사무의 위탁)		제43조(예산확보 및 경비지원)
			제44조(협력체계 구축)
			제45조(사무의 위탁)

- 서울특별시는 제7조부터 제22조에 건강증진, 노인실태조사, 사회·문화활동의 장려, 고령자 의무고용,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생업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생활환경 편의증진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는 제9조부터 제24조에 건강증진,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생업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생활환경 편의증진, 노인친화공원 조성,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경로우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노인학대 예방, 노인자살 예방 등 여러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그 외 기타사항은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IV 개정의견

현행	개정 의견	이유
제4조(계획) ① 생략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 1. 이하 생략	제4조(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하 현행과 같음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한 문장 표현 정비 검토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도지사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군에서 가이드라인에 맞게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① 도지사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의 도시기반시설에서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2. 노인의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3. 노인의 주거환경 안정성 4. 노인의 여가 및 문화 활동 접근성 5. 세대간 교류활성화 및 이해증진 등 노인의 세대간 조화성 6. 자원봉사, 취업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실현성 7. 노인의 사회 참여 및 활동성 8.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노인의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현실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사항을 신설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시군에서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에 의거 시군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생략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시·군에서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에 따라 시·군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현행과 같음	-문장 부호 삽입 검토 -띄어쓰기 정비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 Welcome to Age-friendly World - Age-Friendly World (who.int)

▶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식명칭 : GNAFCC(WHO 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GNAFCC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해당 도시가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의지가 있음을 인정받는 것이다. WHO는 2007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심가져야 할 주요 영역과 점검 항목들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였는데, 이 가이드에 기초한 실행계획 수립이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도시에게 요구되는 주요 과업이다. 이 과업에 따라 2010년 뉴욕시가 첫 회원이 되었고, 2023년 현재 전 세계 51개국 1,445개 도시가 회원 가입하였다. 이러한 회원도시 증가 추세에 따라, 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도시들의 우수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적 정보 교류 활동도 더욱 활성화되어가고 있다.

- 운영주체 :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UN)
- 추진배경 :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문제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함(세계보건기구 WHO가 2006년부터 추진해 온 프로젝트)
- 사업목적
 - 세계 각 도시들의 고령화·도시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공유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
 - 노인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살기 편한 고령친화 환경을 조성

❑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대 영역



외부환경 및 시설 (Outdoor spaces and buildings)

-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제고
- 야외 환경과 공공건물 등을 포괄



여가 및 사회활동 (Social participation)

- 고령자의 가족, 사회, 문화, 종교, 여가활동 접근성 제고
- 행정정보지원체계를 통한 사회적 소속감 증대



교통 수단 편의성 (Transportation)

- 이용이 쉽고 저렴한 대중교통 및 편의 환경 구축
- 고령자 사회참여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존중 및 사회통합 (Respect and social inclusion)

- 고령자 이미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매체 활용
- 지역사회내 고령자 역할 강화를 통한 세대통합



주거 환경 안정성 (Housing)

- 주거시설의 구조, 디자인, 위치, 비용 및 공공 설계
- 고령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 실현



의사소통 및 정보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보제공체계 구축
- 정보접근성 강화로 사회활동 및 인간관계 활성화



인적 자원의 활용 (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 고령자 욕구에 따른 자원봉사 및 취업기회의 확대
- 시민참여활동 독려 및 지역사회공헌 활성화



건강 및 지역돌봄 (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

- 고령자 의료서비스의 충분성·적절성·접근성 강화
- 고령자 건강생활 유지 및 자립생활 가능성 증대

※ 심층분석

□ 집행부 의견 검토

- 고령친화도시는 각 시·군에 맞는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하여 심층분석을 통해 정비 검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시·군의 계획과 별개로 전라북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p>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4.></p> <p>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은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에서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계획과 조례상 계획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현행	개정 의견	이유
<p>제4조(계획) ① 도지사는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p> <p>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 	<p>제4조(계획) ① 도지사는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이 계획은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대신한다.</p> <p>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 	<p>-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연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의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대신하도록 규정 개정 검토</p>

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 노인 지원·고령사회 관련 조례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

- 현재 전라북도의 노인 및 고령사회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노인 관련 조례 14개와 고령 관련 조례 5개의 총 19개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음. 이 중에서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의 경우 전자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아니며, 후자는 노인 복지와 거리가 있는 조례라는 점에서 통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전라북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의 경우에도 건강증진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 추진 등을 고려하여 제외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전라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도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영농지원 조례와의 통합을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노인 지원, 고령사회 관련 조례의 통합 검토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전라북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의 경우 그 성격 및 법령상 위임조례라는 측면에서 통합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음

순번	조례명	제정·개정구분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부서
1	전라북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제정	제4099호	2015. 10. 12.	2015. 10. 12.	건강증진과
2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제4124호	2015. 10. 30.	2015. 10. 30.	
3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제5135호	2022. 10. 21.	2022. 10. 21.	노인복지과
4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제5144호	2022. 11. 04.	2022. 11. 04.	
5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제5144호	2022. 11. 04.	2022. 11. 04.	
6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5144호	2022. 11. 04.	2022. 11. 04.	
7	전라북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제3979호	2015. 05. 01.	2015. 05. 01.	
8	전라북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제정	제5181호	2022. 12. 09.	2022. 12. 09.	노인복지과
9	전라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3979호	2015. 05. 01.	2015. 05. 01.	
10	전라북도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3979호	2015. 05. 01.	2015. 05. 01.	
11	전라북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제4431호	2017. 06. 02.	2017. 06. 02.	

12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5144호	2022. 11. 04.	2022. 11. 04.	
13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제4096호	2015. 10. 12.	2015. 10. 12.	
14	전라북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제5242호	2023. 03. 31.	2023. 03. 31.	노인복지과
15	전라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제5142호	2022. 10. 21.	2022. 10. 21.	도로교통과
16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제정	제4519호	2018. 02. 02.	2018. 02. 02.	
17	전라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제5220호	2023. 03. 03.	2023. 03. 03.	노인복지과
18	전라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정	제5223호	2023. 03. 03.	2023. 03. 03.	농업정책과
19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제5144호	2022. 11. 04.	2022. 11. 04.	

-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검토를 기반으로 통합 가능한 조례간의 규정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조례의 통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정책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전라북도 실정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노인·고령 지원 조례 간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례의 통합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원 등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되며, 중복지원 등이 발생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예산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으로는 노인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맞추어 기본 조례에서 정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개별 조례로 규율하도록 노인·고령 관련 조례 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등이 노인 복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위원회 개최 현황

- 위원회 규정 없음

□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규정	세부사업명	예산('23년)	비고
제7조	노인건강진단사업	46,667	
제7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지원	3,897,952	
제7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1,023,570	
제7조	전라북도노인복지관운영지원	749,687	
제7조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운영지원	717,696	
제7조	노인 무료양로시설 지원	5,938,630	
제7조	고령화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구축사업	140,000	

(단위 : 천 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노인건강진단사업	53,334	53,334	53,334	노인건강검진비 지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지원	3,357,788	3,357,788	3,357,788	독거노인·장애인의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1,165,420	41,165,420	41,165,420	취약노인 돌봄서비스
	전라북도노인복지관 운영지원	622,660	622,660	622,660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지원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운영지원	582,048	582,048	582,048	여가프로그램 지원
	노인 무료양로시설 지원	4,754,492	4,754,492	4,754,492	무의탁 노인의 양로시설 무료입소 지원
	고령화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구축사업	230,000	230,000	230,000	노후준비 지원
2022	노인건강진단사업	53,334	53,334	53,334	노인건강검진비 지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지원	3,806,506	3,806,506	3,806,506	독거노인·장애인의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3,736,740	43,736,740	43,736,740	취약노인 돌봄서비스
	전라북도노인복지관 운영지원	709,00	709,00	709,00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지원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운영지원	626,208	626,208	626,208	여가프로그램 지원

	노인 무료양로시설 지원	5,719,920	5,719,920	5,719,920	무의탁 노인의 양로시설 무료입소 지원
	고령화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구축사업	230,000	230,000	230,000	노후준비 지원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18. 2. 2.] [전라북도조례 제4519호, 2018. 2. 2., 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전라북도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시·군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시·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① 도지사는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도지사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군에서 가이드라인에 맞게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시군에서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에 의거 시군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해당 시군에 보조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고려하여 도 및 시·군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시·군에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시·군,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09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

I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례명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3. 2. 15.	최근개정·시행일	2015. 10. 31./2015. 10. 31. (일부개정 2회)
소관 부서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권익팀	소관 상임위	환경복지위원회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법령 인용 시 꺾쇠를 사용하도록 용어 정비 검토 - 조항 표기 방식에 맞게 규정 표현 정비 검토
	개정 권고	- 조례의 규정 체계에 맞게 규정하도록 제2조와 제3조, 제4조의 규정 순서를 정비하도록 검토 필요. 심층분석을 통해 제시(통상적으로 정의, 책무, 지원대상 순으로 규정함) - 타 시·도와 같이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을 폭넓게 규정하도록 조례 제명 정비 검토(심층분석을 통해 검토 및 별도 제시 예정)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적절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 사업 시행,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이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내용의 적정성	적정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음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현실 적합성	적정	- 전라북도 내에서 정부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복지법인화를 유도하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거주인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 조례 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기타 의견	- 없음	

II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법」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4조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실태조사 -성과평가 추진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7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2조, 제3조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실시(이현주 의원 外 8인 범안 발의)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으로 장애인거주 시설 중 개인운영 장애유형별거주시설로 특정하고 있고(제2조), 도지사의 책무(제4조), 비용의 지원(제7조) 등 행정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체계적으로 담고 있어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대상 조례는 개인운영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및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예산 및 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됨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규정 순서 정비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III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p>○ 최종의견 : (8-1) 대상 조례는 개인운영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및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예산 및 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됨</p>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조례가 제정됨 - (2-4) 조례 제4조에 “전라북도지사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을 이용하는 거주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3년 개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지원 사업(예산: 139,010천 원)을 실시함 - (2-5) 본 조례 및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 내 장애인거주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2022년 6개소, 2023년 2개소 실태조사를 추진함 - (2-5) 매년 2년 시·군의 3개소를 지원하였음. 성과평가를 매년 추진하였음 - (3-1) 조례 제7조에 “도지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 하여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을 지원함. 지원 예산은 2021년 244,450천 원(도비), 2022년 154,455천 원(도비), 2023년 139,010천 원(도비)임.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책정액에 대해 과다상계한 부분을 줄여나가기 때문으로 실제로는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었음. 시·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 내역은 시·군에 문의해야함.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임 	

- (3-2)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시설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을 갖춘 장애인거주시설 중 개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로 한정함
- (3-3) 조례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집행함
- (3-4) 조례 제3조에 ‘개인운영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거주시설 중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지원 대상이 “개인운영 장애유형별거주시설” 로 구체화되어 있음
- (3-6) 조례 제7조에 “도지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비용지원에 대한 재량규정에 근거하여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5-4) 지원대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중 개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로 특정하고 있고(제2조), 도지사의 책무(제4조), 비용의 지원(제7조) 등 행정 및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체계적으로 담고 있어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음
- (6-1) 조례 제·개정 이후 8년 1개월이 경과하였으며, 도내 지적 장애인의 돌봄에 대한 필요성과 꾸준한 수요를 고려할 때 개인운영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적실성이 인정됨

■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붙임1 참조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개인운영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및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예산 및 행정 지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할 것임

• 부수효과

- 개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제3조(정의)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보조금 지원)
제5조(실태조사)	제5조(보조금의 관리)
제6조(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제6조(시행규칙)
제7조(비용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관리)	
제9조(시행규칙)	

- 전라북도와 같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없음
- 충청남도에서는 ‘거주시설’ 이 아닌 ‘복지시설’ 을 지원하여, 시설의 지원 범위를 달리 하고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IV 개정의견

현행	개정 의견	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복지법인화를 유도하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입소 거주인들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목적 조항 정비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시설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설치·운영기준을 갖춘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 개인운영 장애유형별거주시설로(이하 “시설”이라 한다)한정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장애인복지법 중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조례 제명에 맞게 지원대상을 장애유형별거주시설에서 장애인거주시설로 조정 -약칭 사용 및 정비 -띄어쓰기 정비 -조항 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운영 장애유형별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1호의 장애인거주시설 중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에 의해 유형별 거주시설중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삭 제>	-제2조 지원대상에 내용 포함
제6조(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도지사는 시설 이용 장애인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운영 장애유형별거주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으로의 전환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도지사는 시설 이용 장애인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운영 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으로의 전환을 권장할 수 있다.	-제2조에서 약칭한바 대로 약칭사용하도록 정비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심층분석

- 조례의 규정 체계에 맞게 규정하도록 제2조와 제3조, 제4조의 규정 순서를 정비하도록 검토 필요. 심층분석을 통해 제시(통상적으로 정의, 책무, 지원대상 순으로 규정함)
- 현행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의 구성체계와 개정안은 아래와 같음

현행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	개정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지원대상)	제2조 <삭 제>
제3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지원대상)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제6조(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제6조(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관리)	제8조(보조금의 관리)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삭 제>

- 타 시·도와 같이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을 폭넓게 규정하도록 조례 제명 정비 검토
- 경기도와 경상북도, 전라남도의 경우 각각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조례」를 두어 장애인 거주시설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을 폭넓게 규정하여 장애인 보호를 두텁게 하도록 조례 제명과 지원의 범위를 개정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의 향상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원대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한 장애인 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한정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시장·군수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제5조(미신고 등 시설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법에 따른 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미신고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폐쇄조치 등의 합당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이용 장애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도지사는 이용 장애인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법인 장애인 시설로 전환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의 비용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2.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3. 시설 이용 장애인의 건강검진비 등 장애인에게 직접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12.31.>

제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시설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사업 관련 예산집행내역

(단위 : 천 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역
2021	개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지원	244,450	244,450	운영비 및 인건비
2022	개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지원	154,455	154,455	운영비 및 인건비
2023	개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지원	139,010	139,010	운영비 및 인건비

□ 실태조사 결과

[2022년 거주시설 실태조사]

연번	시·군	거주시설	분류
1	전주시	동암재활원	지체
2	익산시	맑은집	영유아
3	익산시	전북보성원	시각
4	익산시	덕암	중증
5	완주군	국제재활원	지체
6	완주군	은혜의동산	지체

[2023년 거주시설 실태조사]

연번	시·군	거주시설	분류
1	군산시	구세군 군산목양원	지체
2	익산시	덕암	지체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

[시행 2015. 10. 30.] [전라북도조례 제4124호, 2015. 10. 30., 일부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복지법인화를 유도하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입소 거주인들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시설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설치·운영기준을 갖춘 장애인거주시설 중 개인운영 장애유형별거주시설로(이하“시설”이라 한다)한정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운영 장애유형별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거주시설 중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에 의해 유형별 거주시설중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을 이용하는 거주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 10. 30>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설 이용 거주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시장·군수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도지사는 시설 이용 장애인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운영 장애유형별거주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으로의 전환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8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 5. 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0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I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례명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7. 6. 2.	최근개정·시행일	2017. 6. 2./2017. 6. 2. (제정)
소관 부서	건강증진과 / 건강정책팀	소관 상임위	환경복지위원회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약칭문 문장 부호 정비 검토 - 띄어쓰기 정비 검토
	개정 권고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 검토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적절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 조례 제4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실시, 제7조에 따른 기관 교류 또는 협력체계 구축 등을 이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내용의 적정성	-	- 조례 내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주요 민생 수용성	적정	- 조례 제개정 시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현행 실효성 부합	적정	- 전라북도 내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함으로써 청소년 음주 예방에 기여하고 도민의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 조례 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기타 의견	- 없음	

II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14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홍보 실시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017. 5. 4. ~ 5. 9.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 음주 피해예방에 기여 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 하기 위하여 조례 유지 필요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평성 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민관 협력체계 구체화 필요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III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p>○ 최종의견 : 별도 의견 없음</p>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 14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2023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 음주폐해예방사업(절주사업, 예산:90,412천 원) 예산을 편성하였음. 해당 예산은 적정함 - (2-5) 14개 시·군에서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22년 지역사회연계협력 체계 활동을 182회 실시함 	
■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p>○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1 참조 <p>○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을 규정하고, 협력체계 운영 등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음주폐해예방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며, 시·군의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활동함으로써 전라남도 내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제4조(음주청정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5조(주류광고 및 후 원행위 제한)	제5조(자치구에 대한 지원)	제5조(청소년 클린관 매점 지정)	제5조(교육 및 홍보)
제6조(도민참여)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음주 폐해로부 터 보호)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 행위 제한)
제7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 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 행위 제한)	제7조(도민참여)
제8조(금주 및 절주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	제8조(시민의 참여와 주류판매자의 권리)	제8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과태료 부과)
제9조(평가 및 반영)	제9조(평가 및 연구지 원)	제9조(건전한 음주문 화 교육 및 홍보)	제9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과태료 부과·징 수 등)	제10조(시민 등의 참 여)	
	제11조(시행규칙)		

-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IV 개정의견

현행	개정 의견	이유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p> <p>2. ~ 3. 생략</p> <p>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제32조,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출자·출연·보조한 기관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p> <p>2. ~ 3. 현행과 같음</p> <p>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제32조,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출자·출연·보조한 기관을 말한다.</p>	<p>-약칭문 문장 부호 정비</p> <p>-띄어쓰기 정비</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생략</p> <p>② 도지사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 및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p> <p>③ 도지사는 <u>도내</u> 도민을 위하여 금주에 관한 교육, 홍보, 계도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도지사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 및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p> <p>③ 도지사는 <u>도 내</u> 도민을 위하여 금주에 관한 교육, 홍보, 계도 등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p>	<p>-약칭문 문장 부호 정비</p> <p>-띄어쓰기 정비</p> <p>-절주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4조제1항과 갖게 제3항의 문장표현 정비</p>
<p>제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금주교육 및 <u>청소년이 아닌 도민</u>에 대한 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금주교육 및 <u>성년자인 도민</u>에 대한 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청소년이 아닌 도민”은 “성인인 도민”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용어 정비 검토</p>
<p>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도지사는 <u>도내</u>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도지사는 <u>도 내</u>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띄어쓰기 정비 검토</p>

<p>제7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건전한 읍주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p>제7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도 내 공공기관이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건전한 읍주문화 조성에 노력하는 시·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군의 건전한 읍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p>	<p>-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구체화하는 방안 검토</p>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p>-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p>

※ 심층분석

- 특별한 심층분석 사유가 없음.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권고함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예산 편성 현황

- '23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 음주폐해예방사업 예산을 편성(절주사업 90,412천 원)

전라북도(총괄)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2023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총계		7,277,540	3,638,770	727,756	2,911,014
1	금연	-	-	-	-
2	절주	90,412	45,206	9,041	36,165
3	신체활동	640,073	320,037	64,008	256,028
4	영양	1,715,622	857,811	171,562	686,249
5	비만	150,556	75,278	15,057	60,221
6	구강	299,416	149,708	29,942	119,766
7	심뇌혈관 예방관리	334,847	167,424	33,484	133,939
8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298,353	149,176	29,836	119,341
9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135,196	67,598	13,520	54,078
10	여성어린이 특화	461,997	230,998	46,200	184,799
11	치매관리	-	-	-	-
12	지역사회 재활	238,412	119,206	23,841	95,365
13	방문건강관리	-	-	-	-
14	교육비	35,170	17,585	3,517	14,068
15	인건비	2,877,486	1,438,743	287,748	1,150,995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6. 2.] [전라북도조례 제4432호, 2017. 6. 2., 제정]

전라북도(건강증진과), 063-280-469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음주 예방에 기여하고 도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禁酒)”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제32조,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출자·출연·보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과도한 음주의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 및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내 도민을 위하여 금주에 관한 교육, 홍보, 계도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금주교육 및 청소년이 아닌 도민에 대한 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도민참여) ①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금주 및 절주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 도지사는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반영)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11 —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I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례명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5. 10. 12.	최근개정·시행일	2022. 10. 2./2022. 10. 2. (일부개정 3회)
소관 부서	일자리민생경제과/민생경제정책팀	소관 상임위	농산업경제위원회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제2조의 정의조항은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목적 조항과 거의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서 입법경제적으로 규정할 실익이 적다고 할 것임. 삭제 검토 - 상위법령상 용어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용어 정비 검토 - 조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조사 정비
	개정 권고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 및 발표에 관한 규정 신설 검토 - “경제민주화는 민선 6기 공약으로 현재 민선 8기 경제 민주화 개념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사업의 설득력과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의견 제시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적절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등을 이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내용의 적정성	적정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음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 등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 조례 제개정 시 입법 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그리고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현행실부합성	개정	- 경제민주화조례는 2015년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조례로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음. 조례 개정 검토 필요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적정	-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임
※ 기타 의견	- 없음	

II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기본 계획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실태조사 : 임의규정 -교육 및 홍보 : 경제민주화의 정책적 효용을 잃었다는 집행부 의견 제시가 있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위원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015. 4. 28. ~ 5. 18. (20일간)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6조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조례가 유지된다면 필요할 것임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적시성이 떨어짐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평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소관 부서 최종의견 참조

III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8-1) 본 조례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적시성이 떨어져 현행 유지의 필요성이 없음

- (8-4) 현 조례는 동반성장, 공정거래, 노동환경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제민주화 내용에 포함되어있지만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함. 경제민주화는 민선 6기 공약으로 현재 민선 8기 경제 민주화 개념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사업의 설득력과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음

○ 내용

- (1-1) 헌법 제119조제2항에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등을 위해 국가가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
- (2-3)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분야별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실시할 예정임(2023년~2027년 5년)

분야	실천과제	예산(백만 원)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지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183,815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05,284
	소비자 권익 보호	1,138
	경제적 약자 지원	1,900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노동복지 및 인권 향상	3,170
	노사민정 협력 강화	553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	1,452,509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17,060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2,016
청년, 여성 등의경제활동 촉진	청년 경제활동 촉진	276,209
	여성 경제활동 촉진	33,23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78,515
지역특화산업균형 성장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	47,700
	탄소융복합소재 개발 및 지원	2,204
농어업 관련 산업 균형 성장	농가 소득 창출	140,475
	지속가능 농업구조 전환	142,208
	농어가 경영안정 강화	2,061,475
관광·체육·문화예술 균형성장	관광산업 지속성장 생태계 조성	9,200
	도민 누구나 즐기는 체육환경 조성	3,100
	지역발전 견인 문화환경 조성	79,200

- (2-5)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조례에서 실태조사와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임
- (2-5) 경제민주화의 정책적 효용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지 않음
- (3-3) 경제민주화위원회 등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함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경제민주화위원회	7,000	7,000	7,000	경제민주화 위원회 등 운영
2022	경제민주화위원회	7,000	7,000	7,000	경제민주화 위원회 등 운영
2023	경제민주화위원회	7,000	7,000	7,000	경제민주화 위원회 등 운영

- (5-2) 조례 제·개정 시 전라북도 경제민주화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 공청회(2016.12.15.(목),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시민사회단체·전문가·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와 전문가 세미나(2015.4.3.(금), 한옥마을완판본문화관, 도의원·준비위원·관련단체 등 전문가 17명)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을 수렴함
- (6-1) 경제민주화 조례는 2015년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조례로 적시성이 떨어짐
- (7-1) 조례 제6조에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규정을 두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7-2)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명칭은 ‘경제민주화위원회’로 함
- (7-3)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2명, 위촉직 7명(남성 3명, 여성 4명) 현원 총 9명으로 조례에 따라 정원 20명 이내로 구성됨
- (7-4) 위원회는 2022년 및 2023년 각 1회씩 개최되었으며, 운영실적을 보존하고 있음

연도별	2021	2022	2023
개최건수	0	1	1
개최일	-	22. 4. 6.	23. 10. 9. ~13. 주간
소요예산	-	700,000	700,000

- (7-5)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등을 세우고 점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가 유지된다면 위원회를 계속하여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됨

■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붙임1 참조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지역경제·지역산업·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위원회의 설치 등이 추진되고 있어서 전라북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경제민주화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할 수 있으며,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통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 도모에 기여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다른 법령·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경제민주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공정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구성)	제6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회의)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회의 등)	제8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임기)	제9조(간사)	제9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10조(간사)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건의 및 의견 개선)	제10조(회의)
제11조(수당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정책 협의)	제11조(분과위원회)
제12조(운영세칙)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제12조(도민 제안)	제12조(간사)
제13조(도민 제안)	제12조(사무처리)	제13조(민원센터 설치)	제13조(수당)
제14조(경제민주화 정책 검토·건의)	제13조(운영세칙)	제14조(교육 및 홍보)	제14조(준용)
제15조(교육 및 홍보)	제14조(경제민주화 정책 검토·건의)	제15조(포상)	제15조(운영세칙)
제16조(포상)	제15조(시·구간 정책 협의)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민원센터 설치)
	제16조(시민제안)		제17조(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장애요인 검토·건의 및 의견개선)
	제17조(경제민주화 지수 개발 및 발표)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교육 및 행사)		
	제19조(행정·재정지원)		
	제20조(시행규칙)		

- 서울특별시는 제17조에서 경제민주화 이행정도의 효과와 변화추세 및 시민 체감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 지수를 연구·개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라남도 및 경기도는 각각 제13조 및 제16조에 민원센터 설치 규정을 두어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IV 개정의견

현행	개정 의견	이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제민주화”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과 동시에 균형 있는 경제 성장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의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불명확함. 제1조의 목적 조항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됨. 삭제 검토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생략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양성평등기본법」상 용어인 “특정 성별”을 사용하도록 정비 -“한 차례만”으로 띄어쓰기 정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새로운 2년을 임기로 하여야 함(법제처 권고사항임-「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24, 226면)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은 “수당”에 대하여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당 규정(제15조)이 자동 적용되므로 규정의 실익 없음(법제처 권고사항임-「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94면)
제13조(도민제안) 경제민주화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 및 장애요인 발굴 등을 위한 도민 공모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도민제안) 경제민주화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 및 장애요인 발굴 등을 위한 도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조제목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정비하고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표현을 정비

<p>제14조(경제민주화 정책 검토·건의) ① 생략</p> <p>②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시·군에 <u>도의 의견 수용을 요청할 수 있다.</u></p> <p>③ 생략</p>	<p>제14조(경제민주화 정책 검토·건의) ① <u>현행과 같음</u></p> <p>②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③ <u>현행과 같음</u></p>	<p>-시·군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도의 의견 수용을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기초자치단체의 자유성 확보를 위하여 제2항 후단 삭제 검토</p>
<p><신 설></p>	<p>제17조(경제민주화 <u>지수 개발 및 발표</u>) 도지사는 <u>도의 경제민주화 이행 정도의 효과와 변화추세 및 시민 체감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 지수를 연구·개발하여 그 결과를 발표 및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u></p>	<p>-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 및 발표에 관한 규정 신설 검토</p>

※ 심층분석

□ 타 시·도 사례 관련 검토

-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하여 민원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래와 같이 민원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 검토

현 행	개 정 의 건	이 유
<신 설>	제17조(민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장애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분야별 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원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 검토

- 다만, 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인력 및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 및 발표에 관한 규정 신설을 제안함. 서울특별시는 제17조에서 경제민주화 이행정도의 효과와 변화추세 및 시민 체감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 지수를 연구개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살펴본 바, 서울특별시가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이를 포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하단 신문기사 참조).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의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개발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규정 신설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16. 09.17. 서울시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 착수..."전국 최초"

<https://www.asiae.co.kr/article/2016091712330646725>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에 나섰다. 경제민주화는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이슈가 됐지만 구체적인 지수를 개발해 정책 실천·개발에 참고하겠다고 나선 것은 중앙·지자체 통틀어 서울시가 처음이다. 특히 최근 들어 대권 도전 의사를 비친 박원순 시장이 내년 대선에서도 최고 논란이 될 경제민주화 이슈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시는 최근 '경제민주화 이행성과 측정을 위한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 학술용역'을 발주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경제민주화 지수를 개발해 지난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세부실천 과제의 명확한 성과 측정 및 관리에 활용한다. 지난 5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공포된 '서울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에 규정된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정책 방향을 제공·객관적인 근거 자료로도 쓸 예정이다.

시는 또 ▲대외환경의 영향력을 고려한 경제민주화정책의 효과성 파악, ▲성과 홍보 및 시민 인식도 제고 ▲ 타 지자체·기관에의 정책 확산 등의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대해선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경제민주화 선언 당시의 발표 내용, 경제민주화의 실천과제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지수 측정 분야에 대해선 상생, 공정, 노동 등 3개 분야로 정했다. 상생은 대·중소기업 및 경제 주체 간의 상생 경제 환경 조성, 공정은 경제 주체간 불공정 문화 해소 및 공정 경제 달성도, 노동은 노동 권의 보장 및 노동자의 권익 보호 향상 등을 측정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2016년 경제민주화 지수 산출할 예정인데, 대외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중앙정부 차원'의 '경제민주화 지수'와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의에 따른 '서울시 경제민주화 지수'를 각각 따로 산출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 경제민주화지수의 각 분야별 분석 ▲경제민주화지수를 통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분석 및 제안 등의 내용도 담긴다.

※ 2016. 10. 23. 경제민주화 점수 매기겠다더니...서울시, 8개월 만에 지수 개발 포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6102374151>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지난 2월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온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이 8개월 만에 백지화됐다. 숫자로 경제민주화 달성도를 측정하려 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사업을 접기로 했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권 예비후보들이 앞다퉀 경제민주화 카드를 들고 나온 상황에서 이들과 차별화하려는 박 시장의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3일 "지난달 말 열린 제1차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수 개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집행부 의견 검토

- "경제민주화는 민선 6기 공약으로 현재 민선 8기 경제민주화 개념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사업의 설득력과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심층분석 필요
- "경제민주화"는 이 조례에서 "전라북도 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과 동시에 균형 있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정의 규정이 공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일반적인 경제민주화에 관한 정의로 보임. 따라서 민선 8기에서 "경제민주화"가 이 조례상이 정의와 어떻게 다른지 확인이 필요함. 외부로 공개된 자료에서는 이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정의 조항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나,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임

□ 참고자료 1 -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민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민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장애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분야별 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전라남도 및 경기도는 각각 제13조 및 제16조에 민원센터 설치 규정을 두어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인력 및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위원회 개최 현황

-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

구분	정원	현원	당연직	위촉직	
				남	여
위원수(명)	20명 이내	9	2	3	4
비율(%)	-	-	-		

연도별	2021	2022	2023
개최건수	0	1	1
개최일	-	'22. 4. 6.(수)	'23 10. 9. ~13. 주간
소요예산	-	700,000	700,000

□ 사업 및 예산집행내역

(단위 : 천 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경제민주화위원회	39,600	39,600	39,600	공정거래 교육 및 전북경제포럼 사업추진
2022	경제민주화위원회	39,600	39,600	39,600	공정거래 교육 및 전북경제포럼 사업추진, 경제민주화위원회 운영
2023	경제민주화위원회	39,600	39,600	38,900	공정거래 교육 및 전북경제포럼 사업추진, 경제민주화위원회 운영

□ 조례 제·개정 시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 수렴 내역

구 분	제 목	개최일시	장 소	참석대상	비 고
공청회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 공청회	2016. 12. 15. (목)	전라북도경제 통상진흥원 도전실 (본관 2층)	150여 명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세미나	전문가세미나	2015. 4. 3. (금)	한옥마을 완판본문화관	전문가 17명 (도 2, 도의원 1, 준비위원 6, 관련단체 3, 관련기관 5)	
토론회	-	-	-	-	
기 타	-	-	-	-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0. 21.] [전라북도조례 제5132호, 2022. 10. 21., 일부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 범위에서 지역경제·지역산업·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제민주화”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과 동시에 균형 있는 경제성장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경제민주화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 범위에서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기본계획 내용을 수정·보완한다.<개정 2022. 3. 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7.13.>

1.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년,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8. 탄소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등의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
9. 농어업 관련 산업의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
10. 관광 및 체육, 문화예술의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
11. 경제민주화 정책 및 장애요인 발굴과 중앙정부 건의 등에 관한 사항
12. 재정 계획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 도민제안을 통하여 제기된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으로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21.>

1. 학계, 법조계, 산업계, 현장전문가 등 경제민주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경제민주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민주화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도민제안) 경제민주화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 및 장애요인 발굴 등을 위한 도민 공모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경제민주화 정책 검토·건의) ① 도지사는 도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거나 중앙부처 등에 건의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3. 도내 이전기관·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4. 주민밀착형 지역연고산업 지원 및 보호
5. 지역개발사업(재건축, 재개발 등)에 있어 소외계층의 경제적 이익 보호
6. 입찰 및 관급공사 등에 중소기업, 관내업체의 참여 확대
7.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제민주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시·군에 도의 의견 수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와 민간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식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관한 정책 및 정보 등을 홍보한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경제민주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단체, 기업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12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I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례명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09. 12. 28.	최근개정·시행일	2022. 10. 21./2022. 10. 21. (일부개정 5회)
소관 부서	농촌활력과 / 농촌활력팀	소관 상임위	농산업경제위원회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전부개정)	일반 정비	- 위원회 규정 관련 문장 부호 등 정비
	개정 권고	-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5조의 기본계획과 제6조의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계획수립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 정비 검토 -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통상 총칙에 규정하므로 총칙규정에 두도록 심층분석을 통해 조례 규정 체계 정비 검토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적절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 의 효 성	적정	-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 실시, 제9조에 따른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시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내용의 적 정 성	적정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음
4. 조 례 의 공 평 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주 수 용 민 성	적정	-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현 실 부 합 성	적정	- 전라북도 내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위 원 회 운 영 의 적 정 성	적정	- 조례 제15조에 따른 위원회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임
※ 기타 의견	- 없음	

II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별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기본 계획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7조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7조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4. 조례의 공정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15조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농촌 기본 단위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민주도의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필요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III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	------------------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8-1) 농촌 기본 단위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민주도의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내용

- (2-3)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1차 : 2016년~2019년, 2차 : 2020년~2022년, 3차 2023년 ~ 2024년)이 수립됨. 또한 ‘전북 마을만들기 연도별 지원계획’ (2021년, 2022년, 2023년)이 수립되어 시행됨
- (2-4) 조례에 따라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시·군 중간지원조직 지원이 실시됨

(단위 : 천 원)

규 정	사 업 명	예산('23년)	비고
제7조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350,000	
제7조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	200,000	
제7조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2,500,000	
제7조	시·군 중간지원조직 지원	2,400,000	

- (2-5) 2017년부터 2023년도까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조직인력: 20명, 위탁기간: 2017년~, 위탁기관: 사)지역활력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단위 : 천 원)

연도	사 업 명	예산(백만 원)	비고
‘17년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1,781	
‘18년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2,168	
‘19년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2,400	
‘20년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2,300	
‘21년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2,300	
‘22년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2,400	
‘23년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2,500	

- (2-5)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생생마을만들기 지원, 귀농귀촌 및 농촌관광 활성화 등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함
- (2-5) 2017년부터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지역활력센터에 위탁하여 생생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및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함
- (3-1) 조례 제7조에 따라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350,000천 원),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200,000천 원),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2,500,000천 원), 시·군 중간지원조직 지원(2,400,000천 원)을 위한 재정지원이 실시됨
- (3-3) 조례 시행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였으며,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의 경우 32,185,140원(주휴수당 : 31,292,470원, 퇴직금 : 892,670원)을 환수한 바 있음

(단위 : 천 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기초단계	350,000	350,000	350,000	13개 시·군
	시설개보수	500,000	500,000	500,000	9개 시·군
	종합지원센터	2,300,000	2,300,000	2,300,000	위탁기관
	중간지원조직	2,000,000	2,000,000	2,000,000	13개 시·군
2022	기초단계	350,000	350,000	350,000	13개 시·군
	시설개보수	250,000	250,000	250,000	7개 시·군
	종합지원센터	2,200,000	2,200,000	2,200,000	위탁기관
	중간지원조직	2,400,000	2,400,000	2,400,000	13개 시·군
2023	기초단계	350,000	350,000	350,000	13개 시·군
	시설개보수	200,000	200,000	200,000	6개 시·군
	종합지원센터	2,500,000	2,500,000	2,500,000	위탁기관
	중간지원조직	2,400,000	2,400,000	2,400,000	13개 시·군

- (7-1) 조례에 따라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를 구성하였음
- (7-3) 위원회 구성은 현원 15명, 당연직 0명, 위촉직 15명(남성 11명(64%), 여성 4명(36%))으로 총 20명임. 위촉직의 성별 구성은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음. 이는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역할 중복성으로 인해 삼락농정 분과위원회(‘23년 농어업농어촌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기 때문임

- (7-4) 위원회는 2021년도 4회, 2022년도 4회, 2023년도 3회 개최됨

연도별	2021	2022	2023
개최건수	4회	4회	3회
개최일	3/15, 6/3, 9/2, 10/21	3/4, 6/22, 10/21, 12/15	3/22, 4/25, 8/17
소요예산	3,500천 원	3,600천 원	2,700천 원

- (7-5) 지방소멸위기로 인해 침체되어가는 농촌의 활력을 위하여 전문성이 바탕이 된 위원회의 지속이 필요함

■ 입법평가 종합의견 (전부개정)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붙임1 참조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운영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마을만들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 운영위원회,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마을만들기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제3조(정의)

제4조(주민,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6조(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제6조(정보의 공유)
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기본계획)
제8조(마을단위 발전 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제10조(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제8조(시행계획)
제9조(전라북도 마을 만들기 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제9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제11조(마을공동체 사업)	제9조(행정협의회의)
제10조(도 협력센터의 기능)	제10조(마을공동체 사업)	제12조(지원신청 등)	제10조(사업)
제11조(사업비의 반환)	제11조(지원신청 등)	제13조(평가 및 포상)	제11조(지원)
제12조(우수마을 지원 등)	제12조(평가·포상)	제14조(사업비의 환수)	제12조(공모계획 수립·공고)
제13조(평가·포상)	제13조(사업비의 환수)	제15조(형성재산의 사용)	제13조(지원신청)
제14조(준용)	제14조(형성재산의 사용)	제16조(사업비의 교부 방법 등)	제14조(지원사업 선정)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준용)	제17조(설치 및 기능)	제15조(보고 등)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6조(설치 및 기능)	제18조(구성)	제16조(평가 및 포상)
제17조(위원회의 회의)	제17조(구성)	제19조(임기)	제17조(사업비의 반환 명령)
제18조(위원회의 참석 수당)	제18조(임기)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8조(형성재산의 사용)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1조(위원의 해촉)	제19조(설치 및 기능)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2조(회의 등)	제20조(구성)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회의 등)	제23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21조(임기)
	제22조(관계부서의 협조)	제24조(수당)	제22조(위원장의 직무)
	제23조(수당)	제25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3조(회의)
	제24조(지원센터의 설치)	제26조(지원센터의 기능)	제24조(서면심의)

	제25조(지원센터의 기능)	제27조(관리 및 운영)	제2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6조(관리 및 운영)	제28조(지도·감독)	제2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7조(지도 감독)	제2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2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28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30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28조(수당 등)
	제2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1조(시행규칙)	제29조(설치)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기능)
			제31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32조(지도·감독)
			제33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3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5조(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및 경기도는 각각 제9조에 행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두어 사업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상북도의 경우 제10조제3항에 따라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기도는 각각 제14조, 제15조, 제18조에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IV 개정의견

현행	개정 의견	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자치실현을 목표로 자치의 기본 단위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민주도의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자치실현을 목표로 자치의 기본 단위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민주도의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u>이바지함</u> 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조항의 규정형식에 맞게 문장 표현 정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자원”이란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니면서 사람에게 매력에 불러 일으키며 지역의 발전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요소와 해당 <u>지역내</u> 인간의 창작물, 그리고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4. 이하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자원”이란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니면서 사람에게 매력에 불러 일으키며 지역의 발전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요소와 해당 <u>지역 내</u> 인간의 창작물, 그리고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4. 이하 현행과 같음	-띄어쓰기 정비
제3조(기본원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마을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 1. 생략 2.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u>행정간</u> 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3. ~ 4. 생략 5. 마을의 의사 결정은 민주적으로, <u>사업 추진은</u>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6.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에서 <u>소외 계층이나</u>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고려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1조에 <u>따른</u>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마을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u>행정 간</u> 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3. ~ 4. 현행과 같음 5. 마을의 의사 결정은 민주적으로, <u>사업추진은</u>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6.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에서 <u>소외계층이나</u>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고려되어야 한다.	-법조방식의 인용표현으로 정비 -띄어쓰기 정비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u>마을만들기 기본계획</u>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에 <u>따른</u>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u>5년마다 마을만들기 기본계획</u>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통상적인 기본계획 수립의 시기에 맞게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정비 검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 표현 정비 검토 -문장의 주술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정비 검토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p>1. ~5. 생략</p> <p>③ 기본계획을 수립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p>	<p>수립·시행해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p>	
<p>제6조(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① 생략</p> <p>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해당 연도 마을만들기 사업 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p> <p>3. 이하 생략</p> <p>4. 지역 주민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 방안</p>	<p>제6조(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해당 연도 마을만들기 사업 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p> <p>3. 현행과 같음</p> <p>4. 지역주민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 방안</p>	<p>-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 표현 정비 검토</p> <p>-띄어쓰기 정비</p>
<p>제7조(지원대상 사업)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② 도지사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시·군 중간지원조직 구축 및 활성화</p> <p>2. 이하 생략</p>	<p>제7조(지원대상 사업)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도지사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시·군 중간 지원 조직 구축 및 활성화</p> <p>2. 이하 현행과 같음</p>	<p>-띄어쓰기 정비</p> <p>-정의조항의 용어와 동일하게 용어를 사용하도록 정비: “중간 지원 조직”</p>
<p>제8조(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등) ① ~ ② 생략</p> <p>③ 마을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에서는 마을만들기 간사 또는 사무장을 채용·운영할 수 있다.</p>	<p>제8조(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마을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에서는 마을만들기 간사 또는 사무장을 채용·운영할 수 있다.</p>	<p>-문장부호 정비</p>
<p>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적인 방안</p>	<p>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적인 방안</p>	<p>-“구성·운영”으로 문장 부호 삽입하도록 수정</p> <p>-「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맞게 규정</p>

<p>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p> <p>③ 생략</p> <p>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당연직 위원 : 경제부지사, 마을만들기 총괄업무담당 국장</p> <p>2. 위촉직 위원 : <u>도의회</u> 의원, 학계, 시민단체, 마을만들기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한차례만</u> 연임할 수 있다.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p>	<p>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u>특정 성별이</u>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u>사람</u>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당연직 위원 : 경제부지사, 마을만들기 총괄업무담당 국장</p> <p>2. 위촉직 위원 : <u>전라북도</u>의회의원, 학계, 시민단체, 마을만들기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u>한 차례만</u> 연임할 수 있다. <삭제</p>	<p>하도록 문장 표현 정비</p> <p>-제2항 조항 끝에 마침표 삽입</p> <p>-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5조의 기본계획과 제6조의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계획수립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 정비 검토</p> <p>-제4항: “자”를 “사람”으로 순화</p> <p>-“한 차례만”으로 띄어쓰기 정비</p> <p>-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공무원은 당연히 재직기간만 위촉되기 때문에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권고사항임-「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24, 226면)</p>
<p>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p> <p>1. ~ 4. 생략</p> <p>5.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u>부의한</u>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신설></p>	<p>제1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u>회의에 부치는</u>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u>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u>」에 따른 <u>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u>가 대신할 수 있다.</p>	<p>“부의한”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순화하도록 정비</p> <p>-현재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에서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 신설</p>
<p>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p> <p>② 생략</p>	<p>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띄어쓰기 정비</p>
<p>제18조(위원회의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p>	<p><삭제></p>	<p>-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은 “수당”에 대하여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당 규</p>

<p>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정(제15조)이 자동 적용되므로 규정의 실익 없음(법제처 권고사항임- 「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94면)</p>
<p>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생략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 3. 생략 4. 기타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p>	<p>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 제> 2.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p>	<p>-“위원의 사망”은 당연 해촉 사유 이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 삭제 검토 -제2항: 문장 마침표 추가 -“기타”를 “그 밖의”로 수정</p>
<p>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u>마</u>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u>다</u>른 법령이나 <u>조례</u>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u>조례</u>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20조(다른 <u>조례</u>와의 관계) <u>마</u>을만들기를 <u>추진</u>에 관하여 <u>다</u>른 <u>조례</u>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u>경우</u>를 제외하고는 이 <u>조례</u>에서 정하는 바에 <u>따른다</u>.</p>	<p>-법령은 당연히 적용되므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으로 정비 검토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통상 총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20조를 제3조의2로 이동 검토 -조례는 주체가 아니므로 조사 정비</p>
<p>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p>-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p>

※ 심층분석

□ 구성체계 정비

-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통상 총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성체계라고 할 것인바, 이 조례에서는 제 20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규정 체계의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의 구성체계와 체계에 맞게 정비한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의 구성체계(안)은 아래와 같음

현행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구성체계(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주민,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제4조(주민,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제6조(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8조(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제8조(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제9조(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제9조<삭제>
제10조(도 협력센터의 기능)	제10조<삭제>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위원회의 회의)
	제18조<삭제>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제11조(사업비의 반환)	제19조의2(사업비의 반환)
제12조(우수마을 지원 등)	제19조의3(우수마을 지원 등)
제13조(평가·포상)	제19조의4(평가·포상)
제14조(준용)	제19조의5(준용)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위원회의 회의)	
제18조(위원회의 참석수당)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1조(시행규칙)	

□ 타 시·도 사례 분석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행정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형성재산의 사용에 관한 규정 추가 검토
- 강원특별자치도 및 경기도는 각각 제9조에 행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두어 사업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상북도의 경우 제10조제3항에 따라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기도는 각각 제14조, 제15조, 제18조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p>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전담부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10조(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전담부서는 도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 회장을 둘 수 있다.</p> <p>③ 주민협의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 마을별로 정한다.</p> <p>④ 주민협의회는 주민의견이 반영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9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도지사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의 관련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9조(행정협의회)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도 및 시·군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행정협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제14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15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18조(형성재산의 사용)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협의회 구성, 형성재산의 사용 규정을 신설함

현행	개정 의견	이유
<p><신설></p>	<p>제6조의2(행정협의회)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도 및 시·군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행정협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행정협의회 규정 신설 검토</p>
<p><신설></p>	<p>제11조의2(형성재산의 사용)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형성재산의 사용에 관한 규정 신설 검토</p>

- 타 시·도의 시사점을 반영한 규정 신설 사항을 포함하여 전체 조항의 위치를 정리한 조례 구성체계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가지조문과 삭제조문이 많아지므로 전체 구성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구성체계(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주민,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제5조(주민,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제7조(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제6조의2(행정협의회)	제8조(행정협의회)
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9조(지원대상 사업)
제8조(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제10조(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제9조<삭제>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8조<삭제>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제19조의2(사업비의 반환)	제15조(사업비의 반환)
제19조의3(형성재산의 사용)	제16조(형성재산의 사용)
제19조의4(우수마을 지원 등)	제17조(우수마을 지원 등)
제19조의5(평가·포상)	제18조(평가·포상)
제19조의6(준용)	제19조(준용)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 전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주의발전과 주민자치실현을 목표로 자치의 기본 단위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민주도의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이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리,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등의 공간적 개념과 지역적으로 문화, 경제,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인 개념을 총칭한다. 2. “전라북도 마을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원”이란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니면서 사람에게 매력을 불러일으키며 지역의 발전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요소와 해당 지역 내 인간의 창작물, 그리고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4. “중간 지원”이란 행정과 주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마을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기획, 실행, 사후 관리 등의 지원 행위를 의미한다.
5. “중간 지원 조직”은 중간 지원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 민·관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마을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

1.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하고 환경과 조화를 통해 후세대와의 공존·공영을 지향해야 한다.
2.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행정 간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3.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만들기는 주민 자치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5. 마을의 의사 결정은 민주적으로, 사업추진은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6.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에서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고려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만들기를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민,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① 주민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기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② 행정은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며 마을만들기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③ 중간 지원 조직은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행정과 주민의 안정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5년마다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에 관한 비전과 목표
2. 마을만들기 추진방향과 추진체계
3. 마을만들기 행정 협력 체계
4.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및 지원체계
5. 마을만들기 사업내용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추진 현황과 성과 분석
2. 해당 연도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
3. 마을만들기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4. 지역주민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 방안

제8조(행정협의회)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도 및 시·군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 사업)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6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제7조의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3.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운용 사업
4.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
5.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운용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시군 중간지원조직 구축 및 활성화
2. 제10조의 마을단위 발전계획에 의한 주민 소득 확대, 문화 활동, 복지 증진, 관광 활성화, 도시 재생, 공동 시설 조성 및 보수, 정보화 기반 구축 등
3. 그 밖에 별표에 따른 도지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10조(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등) ① 마을주민은 마을만들기를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발전계획 수립과 운영은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마을단위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마을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에서는 마을만들기 간사 또는 사무장을 채용·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대행할 수 있으며 간사는 마을만들기 총괄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경제부지사, 마을만들기 총괄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전라북도의회 의원, 학계, 시민단체, 마을만들기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마을만들기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신청사업에 대한 선정
3. 마을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5.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5조(사업비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이나 조례 및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제16조(형성재산의 사용)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우수마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마을만들기 사업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시·군과 연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이 완료되고 사후관리가 잘 되는 시·군과 마을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홍보와 확산을 위한 전시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을에서 참가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평가·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분석 및 평가하고 전문성과 향후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사업추진에 공이 있는 공무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마을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마을만들기 사업 신청절차와 사업비 교부방법 및 집행·정산·재산처분의 제한 등에 관해서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위원회 개최 현황

구분	정원	현원	당연직	위촉직	
				남	여
위원수(명)	20	15	0	11	4
비율(%)	-	-	-	64%	36%

-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역할 중복성으로 인해 삼락농정 분과위원회('23년 농어업농어촌 위원회)로 통합 운영함

연도별	2021	2022	2023
개최건수	4회	4회	3회
개최일	3/15, 6/3, 9/2, 10/21	3/4, 6/22, 10/21, 12/15	3/22, 4/25, 8/17
소요예산	3,500천 원	3,600천 원	2,700천 원

□ 사업 및 예산집행내역

- 재정지원 관련 규정

(단위 : 천 원)

규정	사업명	예산('23년)	비고
제7조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350,000	
제7조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	200,000	
제7조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2,500,000	
제7조	사군 중간지원조직 지원	2,400,000	

-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기초단계	350,000	350,000	350,000	13개 사군
	시설개보수	500,000	500,000	500,000	9개 사군
	종합지원센터	2,300,000	2,300,000	2,300,000	위탁기관
	중간지원조직	2,000,000	2,000,000	2,000,000	13개 사군
2022	기초단계	350,000	350,000	350,000	13개 사군
	시설개보수	250,000	250,000	250,000	7개 사군
	종합지원센터	2,200,000	2,200,000	2,200,000	위탁기관
	중간지원조직	2,400,000	2,400,000	2,400,000	13개 사군
2023	기초단계	350,000	350,000	350,000	13개 사군
	시설개보수	200,000	200,000	200,000	6개 사군
	종합지원센터	2,500,000	2,500,000	2,500,000	위탁기관
	중간지원조직	2,400,000	2,400,000	2,400,000	13개 사군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시행 2022. 10. 21.] [전라북도조례 제5132호, 2022. 10. 21., 일부개정]

전라북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주의발전과 주민자치실현을 목표로 자치의 기본 단위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민주도의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개정 2015. 10.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리,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등의 공간적 개념과 지역적으로 문화, 경제,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개정 2022. 3. 11.>
2. “전라북도 마을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원”이란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니면서 사람에게 매력을 불러 일으키며 지역의 발전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요소와 해당 지역내 인간의 창작물, 그리고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4. “중간 지원”이란 행정과 주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마을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기획, 실행, 사후 관리 등의 지원 행위를 의미한다.<신설 2015. 10. 12>
5. “중간 지원 조직”은 중간 지원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 민·관 협력체계를 말한다.<신설 2015. 10. 12>

제3조(기본원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마을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

1.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하고 환경과 조화를 통해 후세대와의 공존·공영을 지향해야 한다.
2.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간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3.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만들기는 주민 자치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5. 마을의 의사 결정은 민주적으로, 사업 추진은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6.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에서 소외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고려되어야 한다.

제4조(주민,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① 주민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기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② 행정은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며 마을만들기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③ 중간 지원 조직은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행정과 주민의 안정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5. 10. 12>

제2장 전북 마을만들기 지원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만들기에 관한 비전과 목표
2. 마을만들기 추진방향과 추진체계
3. 마을만들기 행정 협력 체계
4.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및 지원체계
5. 마을만들기 사업내용

③ 기본계획을 수립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마을만들기 추진 현황과 성과 분석
2. 해당 연도 마을만들기 사업 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개정 2015. 10. 12>
3. 마을만들기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4. 지역주민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 방안<개정 2015. 10. 12>

제7조(지원대상 사업)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1. 제5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제6조의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개정 2015. 10. 12>
3.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운용 사업<개정 2015. 10. 12>
4.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
5.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운용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시군 중간지원조직 구축 및 활성화
2. 제8조의 마을단위 발전계획에 의한 주민 소득 확대, 문화 활동, 복지 증진, 관광 활성화, 도시 재생, 공동 시설 조성 및 보수, 정보화 기반 구축 등
3. 그 밖에 별표에 따른 도지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신설 2015. 10. 12>

제8조(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등) ① 마을주민은 마을만들기를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발전계획 수립과 운영은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마을단위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마을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에서는 마을만들기 간사 또는 사무장을 채용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제10조(도 협력센터의 기능)

제11조(사업비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이나 조례 및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제12조(우수마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마을만들기 사업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시·군과 연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이 완료되고 사후관리가 잘 되는 시·군과 마을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홍보와 확산을 위한 전시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을에서 참가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평가·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분석 및 평가하고 전문성과 향후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사업추진에 공이 있는 공무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마을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마을만들기 사업 신청절차와 사업비 교부방법 및 집행·정산·재산처분의 제한 등에 관해서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5. 1>

제3장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등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단서신설 2015. 10. 12>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대행할 수 있으며 간사는 마을만들기 총괄담당으로 한다.<개정 2022. 10. 21.>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경제부지사, 마을만들기 총괄업무담당 국장<개정 2022. 10. 21.>
2. 위촉직 위원 : 도의회 의원, 학계, 시민단체, 마을만들기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개정 2015. 10. 12>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마을만들기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신청사업에 대한 선정
3. 마을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5.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원회의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개정 2015. 10. 12>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개정 2015. 10. 12>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2>

④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2>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4. 기타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13 —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

I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례명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5. 3. 27.	최근개정·시행일	2015. 3. 27./2015. 3. 27. (제정)
소관 부서	미래산업과 / 과학기술팀	소관 상임위	농산업경제위원회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약칭을 하고 사용하도록 용어 정비 검토 - 협의회 위원의 연임 규정 표현 정비 검토
	개정 권고	- 이 조례 제4조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부여하고 있으며, 계획을 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정비 검토 -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조사 결과의 계획수립에의 환류를 규정하도록 규정 신설 검토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적절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 조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 제6조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실시, 교육 및 홍보 등을 이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내용의 적정성	적정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였음
4. 조례의 공정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 조례 제개정 시 입법 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현실 적합성	적정	- 전라북도 내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적정	-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협의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 기타 의견	- 없음	

II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과학기술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4조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6조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6조 -붙임1 참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정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015. 2. 24 ~ 3. 2 (의견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 필요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평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규정 신설 검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Ⅲ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
<p>■ 소관 부서 의견(팀)</p> <p>○ 최종의견 : (8-1) 본 조례는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 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p>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과학기술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제정됨 - (2-3)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1차:2016년~2020년, 2차:2021년~2025년),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이용 지원 시행 계획’ (2015~2023년 : 매년 수립)을 수립하고 실시함 - (2-4) 조례 제6조에 따라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은 150,000천 원임 - (2-5)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재) 전북테크노파크(조직인력 182명(8명), 전담지정: 2015~)에 위탁하였으며, 2021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150,000천 원이 소요됨 - (2-5) 매년 1회, 전담기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현황 및 실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함. 매년 상·하반기에 전담기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전북 노후화 장비 현황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함 - (2-5) 매년 10회에 걸쳐 도내 연구개발장비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약 6,000천 원을 집행함. 매년 5회 이상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약 4,000천원을 집행함 	

구 분	교 육 / 홍 보 명	날 짜	비 고
교육	듀얼이온 크로마토그래피	`23.07.10	14 수료
교육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	`23.07.11.	49 수료
교육	2차전지(비표면적분석기, BET) 품질분석 교육	`23.07.18.	13 수료
교육	2차전지(열분석기, TA)품질분석 교육	`23.07.18.	13 수료
교육	KOLAS국제공인시험기관소개	`23.07.19.	15 수료
교육	2차전지(라만분광기, Raman) 품질분석 교육	`23.07.19.	15 수료
교육	FE-SEM 및 EDS 활용 교육	`23.07.25	11 수료
교육	EBSD 이론 및 실습 교육	`23.07.25	11 수료
교육	LC/MS 작동 및 Masshunter 프로그램	`23.08.08	12 수료
교육	천연물 분석법 및 연구	`23.08.08	10 수료
홍보	전북TP 통합설명회 홍보영상 게시	23.02.07.	-
홍보	홍보 메일 발송	23.03.06.	-
홍보	보도자료 2회	23.03.10./07.26.	-
홍보	팝업창 홍보물 게시	23.03.14.	-
홍보	띠배너 활용 도 내 기관홍보	23.03.21.	-
홍보	장비협의체 대표장비 통합안내서 제작	23.03.23.	-
홍보	유튜브 동영상 홍보	23.03.27.	-

- (2-5) 시험·인증기관 지정 등은 각 공동활용연구개발장비 보유 기관의 역량 등을 통해 중앙부처에서 지정하므로 인증기관 등을 지정하지 않음
- (2-5) 공동활용연구개발장비의 사용 및 대여 등은 각 연구개발장비 보유 기관 고유 업무 및 권한이므로 시설 등 대여는 실시하지 않음
- (2-5) 2020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결과보고서’가 이듬해 1~2월 작성됨
- (2-5) 산·학·연·관 운영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장비협의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비현안 협의 및 심의의결을 실시함. 장비협의체 실무자협의회는 39개 기관 실무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장비현안 및 주요안건 협의·상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

연 도	세 부 현 황	실적	비고
'23년	'23년 장비협의체 운영	5회	
'22년	'22년 장비협의체 운영	6회	
'21년	'21년 장비협의체 운영	6회	

- (2-5) 연구장비 공동활용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함

연 도	세 부 현 황	소 속	포 상 자
'22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유공자	(재)전북테크노파크	000
'22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유공자	군산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000
'21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유공자	(재)전북테크노파크	000

- (2-5) 전담기관 지정에 따라 위탁을 실시하지 않음

- (3-1) 조례 제6조에 따라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을 실시함

(단위 : 천 원)

연 도	사 업 명	예 산	비 고
'23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50,000	
'22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50,000	
'21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50,000	

- (3-3) 2020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을 실시하여 매년 150,000천 원을 확보하여 집행함

(단위 : 천 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50,000	150,000	146,995	인건비 37,918 여비 700 전문가활용비 15,948 도서인쇄비 4,950 광고선전비 3,000 공공요금 143 회의행사비 4,597 일반용역비 14,000 지급수수료 1,000 기업지원비 54,965 연구수당 2,274 간접비 7,500
2021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50,000	150,000	121,779	인건비 37,706 여비 425 전문가활용비 7,700 도서인쇄비 210 공공요금 132 회의행사비 778 일반용역비 8,070 지급수수료 1,000 기업지원비 55,349 연구수당 2,909 간접비 7,500

2020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50,000	150,000	135,943	인건비 33,638 여비 287 전문가활용비 11,821 도서인쇄비 700 공공요금 132 광고선전비 3,700 회의행사비 609 일반용역비 19,910 지급수수료 1,000 기업지원비 54,646 연구수당 2,000 간접비 7,500
------	------------------------	---------	---------	---------	--

- (7-1)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음
- (7-2)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는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임
- (7-3)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12명, 위촉직 2명(남성 2명) 총 현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의 남성 비율은 100%임
- (7-4) 위원회는 2021년도 6회, 2022년도 6회, 2023년도 5회 개최되었음

연도별	2021	2022	2023
개최건수	6회	6회	5회
개최일	4/1, 11/23, 12/10, 12/15, 12/16, 12/21	3/3, 3/15, 3/24, 8/18, 10/7, 12/19	1/16, 3/8, 4/13, 5/15, 8/16
소요예산	4,900천 원	7,800천 원	6,300천 원

- (7-5) 위원회는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붙임1 참조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 실태조사, 운영협의회 설치·운영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본 조례를 통하여 전라북도 내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함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책무)	제3조(공동 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실태조사)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전담기관 지정 등)
제5조(실태조사)	제5조(공동네트워크 운영)	제5조(실태조사)	제5조(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 시스템 운영)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	제6조(협의회의 설치)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	제6조(성과평가 등)
제7조(성과평가 등)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성과평가 등)	제7조(연구개발장비의 유지관리)
제8조(연구장비의 유지관리)	제8조(임기)	제8조(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 설치)
제9조(연구개발장비운 영협의회 설치)	제9조(위원장)	제9조(연구개발장비운 영협의회 설치)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제10조(구성 및 운영)	제10조(운영)	제10조(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여비 등)	제11조(간사)	제11조(장비활용 사용료)	제12조(운영협의회의 심의사항)
제12조(장비활용 사용료)	제12조(운영세칙)		제13조(장비사용 수수료)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제14조(수당 등)
	제14조(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		
	제15조(사용료)		
	제16조(포상)		

- 대전광역시는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이 우수한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타사항은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IV 개정의견

현행	개정 의견	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u>도내</u>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u>전라북도 내</u>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칭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용어 정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란 <u>도내</u>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구축비용이 소요된 연구개발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란 <u>전라북도</u> (이하 “도”라 한다)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구축비용이 소요된 연구개발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전라북도”를 약칭하도록 정비 검토 -금액 관련 마침표 사용하도록 정비 검토
제3조(도지사의 책무) <u>도지사</u> 는 <u>도내</u>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u>전라북도지사</u>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u>도 내</u>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를 약칭하고 사용하도록 정비 검토 -띄어쓰기 정비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② 생략 ③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u>관련기관</u>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u>관계 기관</u>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도록 정비 검토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u>도내</u>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u>도 내</u>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조사 결과의 계획수립에의 환류를 규정하도록 규정 신설 검토

<p><신 설></p>	<p>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7조(성과평가 등)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u>도의회</u>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7조(성과평가 등)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u>전라북도의회</u>(이하 “<u>도의회</u>”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도의회”를 약칭하도록 정비 검토</p>
<p>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u>도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의 협력</u>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u>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u>(이하 “<u>협의회</u>”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u>도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 전담기관, 주관기관 등의 협력</u>을 위하여 <u>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u>(이하 “<u>협의회</u>”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필요 시 구성하여 운영하고 협의를 마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p>	<p>-이 조례 제4조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부여하고 있으며, 계획을 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정비 검토</p> <p>-연구개발장비의 활성화에 대학 등의 협력관계 명시</p> <p>-일시적 운영 권고에 따른 “필요시 설치하고 마치면 자동해산 한다.”는 의미의 규정 신설</p>
<p>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 ⑤ 생략</p> <p>⑥ <u>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⑦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규정으로 정한다.</u></p>	<p>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삭제></p> <p>⑦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u></p>	<p>-자동해산하는 규정을 제9조에 신설하는 경우 제6항의 위원 임기 규정 삭제 필요</p> <p>-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정비 검토</p>
<p>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u>규칙으로 정한다</u></p>	<p><삭 제></p>	<p>-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p>

※ 심층분석

□ 협의회 관련 규정 검토

- 이 조례 제4조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부여하고 있으며, 계획을 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정비 검토
- 다만, 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① 심의·자문이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하거나, ② 유사한 협의회가 그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대행 규정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 경우 매년 계획 수립 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유사한 협의회가 전라북도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자동해산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현행	개정 의견	이유
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의 협력을 위하여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필요 시 구성하여 운영하고 협의를 마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심의·자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규정 정비

-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조사 결과의 계획수립에의 환류를 규정하도록 규정 신설 검토

현행	개정 의견	이유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u>도내</u>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u>도 내</u>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조사 결과의 계획수립에의 환류를 규정하도록 규정 신설 검토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사업 관련 추진실적

- 도 내 연구개발장비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구 분	교육 / 홍보 명	날짜	비고
교육	듀얼이온 크로마토그래피	`23.07.10	14 수료
교육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	`23.07.11.	49 수료
교육	2차전지(비표면적분석기, BET) 품질분석 교육	`23.07.18.	13 수료
교육	2차전지(열분석기, TA)품질분석 교육	`23.07.18.	13 수료
교육	KOLAS국제공인시험기관소개	`23.07.19.	15 수료
교육	2차전지(라만분광기, Raman) 품질분석 교육	`23.07.19.	15 수료
교육	FE-SEM 및 EDS 활용 교육	`23.07.25	11 수료
교육	EBSD 이론 및 실습 교육	`23.07.25	11 수료
교육	LC/MS 작동 및 Masshunter 프로그램	`23.08.08	12 수료
교육	천연물 분석법 및 연구	`23.08.08	10 수료
홍보	전북TP 통합설명회 홍보영상 게시	23.02.07.	-
홍보	홍보 메일 발송	23.03.06.	-
홍보	보도자료 2회	23.03.10./07.26.	-
홍보	팝업창 홍보물 게시	23.03.14.	-
홍보	띠배너 활용 도내 기관홍보	23.03.21.	-
홍보	장비협의체 대표장비 통합안내서 제작	23.03.23.	-
홍보	유튜브 동영상 홍보	23.03.27.	-

- 장비협의체 운영위원회 구성

연 도	세 부 현 황	실적	비고
'23년	'23년 장비협의체 운영	5회	
'22년	'22년 장비협의체 운영	6회	
'21년	'21년 장비협의체 운영	6회	

- 연구장비 공동활용 유공자에 포상

연 도	세 부 현 황	소속	포상자
'22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유공자	(재)전북테크노파크	OOO
'22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유공자	군산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OOO
'21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유공자	(재)전북테크노파크	OOO

-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단위 : 천 원)

연 도	사 업 명	예산	비고
'23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50,000	
'22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50,000	
'21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50,000	

-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50,000	150,000	146,995	인건비 37,918 여비 700 전문가활용비 15,948 도서인쇄비 4,950 광고선전비 3,000 공공요금 143 회의행사비 4,597 일반용역비 14,000 지급수수료 1,000 기업지원비 54,965 연구수당 2,274 간접비 7,500
2021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50,000	150,000	121,779	인건비 37,706 여비 425 전문가활용비 7,700 도서인쇄비 210 공공요금 132 회의행사비 778 일반용역비 8,070 지급수수료 1,000 기업지원비 55,349 연구수당 2,909 간접비 7,500
2020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50,000	150,000	135,943	인건비 33,638 여비 287 전문가활용비 11,821 도서인쇄비 700 공공요금 132 광고선전비 3,700 회의행사비 609 일반용역비 19,910 지급수수료 1,000 기업지원비 54,646 연구수당 2,000 간접비 7,500

□ 위원회 개최 현황

- 개최 현황

연도별	2021	2022	2023
개최건수	6회	6회	5회
개최일	4/1, 11/23, 12/10, 12/15, 12/16, 12/21	3/3, 3/15, 3/24, 8/18, 10/7, 12/19	1/16, 3/8, 4/13, 5/15, 8/16
소요예산	4,900천 원	7,800천 원	6,300천 원

- 위원별 구성

구분	정원	현원	당연직	위촉직	
				남	여
위원수(명)	15	14	12	2	0
비율(%)	100	93.3	80	13.3	0

※ 협의회는 도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의 장비 담당 총괄책임자로 구성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

[시행 2015. 3. 27.] [전라북도조례 제3697호, 2015. 3. 27., 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란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구축비용이 소요된 연구개발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2. “장비 등 활용”이란 연구개발장비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해 장비 등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의 기관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주관기관”이란 제품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 등에 장비의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매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방안 수립
 2. 공동활용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방안 수립
 5. 공동활용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
 6. 그 밖에 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성과평가 등)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연구장비의 유지관리) ① 연구개발장비를 공동활용하는 수요기관 등은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 등이 장비를 활용함에 있어 파손·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파손·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다른 수요기관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
3. 기업의 연구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장비 공동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장비 중복구입 확인 및 기관간 연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장비사용 수수료 책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여비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장비활용 사용료) ① 장비활용에 따른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장비에 대한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14 —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I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례명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조례 구분	위임조례	관계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3
제정·시행일	2007. 2. 2.	최근개정·시행일	2022. 10. 21./2022. 10. 21. (전부개정 1회 / 일부개정 9회)
소관 부서	미래산업과 / 미래산업기획팀	소관 상임위	농산업경제위원회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법률의 제명은 일반적으로 「○○법」 또는 「○○에 관한 법률」로 정함. 이에 맞게 조례 제명 정비 검토
	개정 권고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산업을 기술집약적인 경제구조로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있도록 규정 신설 검토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3을 근거로 하여 적절한 위임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 조례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조례 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0조에 따른 사업 실시 등을 이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내용의 적정성	적정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음
4. 조례의 공정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 조례 제개정 시 입법 예고 기간을 두고 있으며,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현행 실효성	적정	- 전라북도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적정	-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임
※ 기타 의견	- 없음	

II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시행계획(법정계획)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17조 -붙임1 참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17조 -붙임1 참조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19조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0일 간 실시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4조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협의회 규정 정비 -계획수립 규정 정비 -실태조사 규정 신설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Ⅲ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p>○ 최종의견 : (8-1) 본 조례는 전북의 과학기술역량강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함. 또한 정부에서는 2023년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 과학기술컨트롤타워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지역 간 정책부합성 제고를 위해 유지가 필요함</p>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3(조례의 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 - (2-3) 조례에 따라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을 수립하고 시행함 - (2-4) 조례에 따라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추진함 - (2-4) 조례 제15조에 따라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과학기술진흥단’ (정원: 15명 /2009년 과기부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선정/사업명: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육성사업 지원사업/지원예산: 2022~2023년 각각 5억 원)을 전담기관으로 선정하였음 - (2-5) 과학문화 확산 및 과학의식 제고를 위하여 ‘과학문화 확산사업’ 을 실시하여 전라북도 과학축전을 매년 개최하여 다양한 과학기술의 홍보 및 체험과 학습기회를 제공함. 지원예산은 2022년 및 2023년에 각각 3.3억 원으로 함 - (2-5) 조례 제17조에 따라 공동협력사업(‘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지원예산: 2022년 3.7억 원, 2023년 5억 원),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지원예산: 2022년 4.5억 원, 2023년 4.7억 원), 지역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지원예산: 2022년 1.0억 원, 2023년 1.0억 원),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사업(지원예산: 2022년 3.0억 원, 2023년 3.0억 원)을 실시함. 또한 	

제18조에 따라 R&D기관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지원예산: 2022년 2.5억 원, 2023년 2.5억 원)을 실시함

- (2-5) 조례 제19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전북테크노파크에 공동협력사업과 과학문화확산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함

(단위 : 천 원)

규 정	사 업 명	예산('23년)	비고
제17조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500,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20조	과학문화 확산사업	330,000	전북테크노파크

- (2-5) 연구개발사업 총괄 관리 및 기획을 위하여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용역(2023년 150,000천 원)’, 연구개발 성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혁신성장 R&D+ 사업(2023년 4,800,000천 원)’, 기업 기술애로 지원을 위한 ‘R&D기술사업화 지원사업(2023년 1,800,000천 원)’ 을 실시함
- (3-1) 조례 제15조에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테크노파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고 하여 전담기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지원사업’ 으로 연 5억 원을 지원한 바 있음
- (3-2) 조례 제17조는 “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연구원, 공공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내 과학기술 지원대상을 모두 포함함
- (3-3) 2021년도에서 2023년도에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북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500,000천원을 지원하여 집행함
- (3-4) 조례 제17조에 공동협력사업 관련 규정에 “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연구원, 공공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지원대상이 구체화되어 있음
- (3-5) 조례 제19조의 업무의 위탁 관련 규정은 “도지사는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

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대상으로 적정함

- (3-6) 조례 제14조는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의 총괄부서를 미래산업과로 지정하고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사업 총괄관리, 사업 기획평가, 위원회 구성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관리 등에 한정되고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은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으로 구성되어 재량권 범위가 적정함
- (7-1) 조례 제4조에 “전라북도의 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북도 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전라북도 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 (7-2)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명칭은 ‘전라북도 과학기술위원회’로 함
- (7-3) 위원회는 정원 30명으로 당연직 9명, 위촉직 [남성 12명(57.1%), 여성 9명(42.9%)] 21명으로 현원 30명임
- (7-4) 위원회는 2022년 1회(2022.4.21.) 실시되었으며 3,664천 원이 소요됨. 그리고 2023년 10월에 개최될 예정임
- (7-5) 본 조례는 전북도 과학기술분야 최고의 정책결정 컨트롤타워로서 성장동력사업 발굴 등 국책사업 발굴 기획 기능이 있으며, 위원회 산하에 산업별 분류로 연구회(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2022년도에는 13대 연구회를 구성하여 산학연 전문가 105명이 참여하여 연154회의 회의개최 및 61건의 국책사업을 발굴하였음. 이에 따라 위원회 운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붙임1 참조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본 조례를 통한 과학기술사업 지원으로 지역경제발전과 생활과학 저변확대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책임과 의무)	제2조(시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종합계획 수립·시행)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종합계획 수립·시행)	제3조(과학기술진흥협의회)
제4조(위원회)	제4조(설치·기능)	제4조(과학기술위원회)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구성)	제5조(기능)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임기)	제6조(구성)	제6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제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연구회)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삭제)	제7조의3(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분과위원회)	제8조(회의)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위원의 해촉)	제9조(소위원회)
제12조(수당 등)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제10조(수당 등)
제13조(비밀보호)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1조(비밀보호)
제14조(총괄부서)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비밀보호)	제12조(진흥사업)
제15조(전담기관)	제15조(과학기술진흥사업)	제15조(기금설치)	제13조(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
제16조(사업추진부서)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확산 등)	제15조의2(준속기한)	제14조(과학기술대상)
제17조(공동협력사업)	제17조(기초과학의 육성)	제16조(기금의 조성)	제15조(민간기술개발 지원)

제18조(연구기관 등 유치·지원)	제18조(과학기술문화 확산)	제17조(기금의 용도)	제16조(총괄부서)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국내외 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	제18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7조(사전협의)
제20조(과학문화 확산 및 청소년 과학의식 제고사업)	제20조(설립)	제18조의2(과학기술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8조(전담기관 지정·운영)
제21조(포상)	제21조(사업)	제18조의3(위원의 재직·기피·회피 등)	제19조(포상)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재산의 조성)	제19조(삭제)	제20조(시행규칙)
	제23조(지도·감독)	제20조(과학기술진흥사업)	
	제24조(사무의 위탁)	제21조(과학대중화 사업)	
	제25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제22조(삭제)	
	제5장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구축 등	제23조(벤처기업 육성·지원)	
	제26조(총괄부서)	제23조의2(과학기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제2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평가)	제23조의3(국내외 연구기관 등 유치·지원)	
	제28조(포상)	제24조(포상)	
		제25조(삭제)	

- 부산광역시 제11조에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제23조에서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산업을 기술집약적인 경제구조로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23조의3에 따라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과학기술 관련 국공립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전라남도 제15조에 따라 기업 등 민간의 기술개발과 지적재산권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외의 사항은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IV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불필요한 “~을 위한”을 조례 제명에서 삭제하도록 정비 검토
제3조(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에 의한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③ 이하 생략	제3조(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③ 이하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한 경우 법률상계획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 조례상의 계획으로 간주하도록 규정 정비 검토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제>	-문장부호 추가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새로운 2년을 임기로 하여야 함(법제처 권고사항임-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24, 226면)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은 “수당”에 대하여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당 규정(제15조)이 자동 적용되므로 규정의 실익 없음(법제처 권고사항임- 「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94면)
<신설>	제18조의2(국내외 연구기관 등 유치 지원) 도지사는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과학기술관련 국·공립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유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설립 및 장비구입 등 기반구축사업 2.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검토

<p><신 설></p>	<p>제18조의3(민간기술개발 지원) <u>① 도지사는 기업 등 민간의 기술개발과 지적재산권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시기 및 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u></p>	<p>-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검토</p>
<p>제1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인용 표현에 맞게 정비</p>
<p>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p>-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p>

※ 심층분석

- 조례의 제명을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도록 검토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벤처기업 발굴·육성 규정 신설, 산업을 기술집약적 구조로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국내외 연구기관 등 유지·지원 규정 신설 검토

현행	개정 의견	이유
<신설>	<p>제18조의2(국내외 연구기관 등 유치 지원) 도지사는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과학기술관련 국·공립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유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설립 및 장비구입 등 기반구축사업</p> <p>2.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p>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검토
<신설>	<p>제18조의3(민간기술개발 지원)</p> <p>① 도지사는 기업 등 민간의 기술개발과 지적재산권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시기 및 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p>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검토

□ 참고자료 1 -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p>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23조(벤처기업 육성·지원) ① 시장은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대전의 산업을 기술집약적인 경제구조로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2014.10.28., 2017.7.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권리를 주된 부분으로 하여 창업하는 기업 2. 특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로 창업하는 개인 또는 단체 	
	<p>제23조의3(국내외 연구기관 등 유치·지원) 시장은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과학기술관련 국공립 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유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립 및 장비구입 등 기반 구축사업 2.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p>제15조(민간기술개발 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 등 민간의 기술개발과 지적재산권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시기 및 규모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p>
--	--	--

- 부산광역시는 제11조에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는 제23조에서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산업을 기술집약적인 경제 구조로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23조의3에 따라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과학기술관련 국공립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전라남도는 제15조에 따라 기업 등 민간의 기술개발과 지적재산권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위원회 개최 현황

- 위원회 구성

구분	정원	현원	당연직	위촉직	
				남	여
위원수(명)	30	30	9	12	9
비율(%)	-	-	-	57.1	42.9

- 위원회 개최 실적

연도별	2021	2022	2023
개최건수	-	1회(대면)	-
개최일	-	22.4.21	-
소요예산	-	3,664천 원	-

□ 사업실적 및 예산 현황

- 예산 집행 현황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500,000	500,000	500,000	전북테크노파크 출연금
2022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500,000	500,000	500,000	전북테크노파크 출연금
2023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500,000	500,000	500,000	전북테크노파크 출연금

- 업무위탁 예산

규 정	사 업 명	예산('23년)	비고
제17조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500,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20조	과학문화 확산사업	330,000	전북테크노파크

- 규정별 사업 현황

(단위 : 천 원)

규 정	사 업 명	예산('23년)	비고
제14조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용역	150,000	
제15조	혁신성장 R&D+ 사업	4,800,000	
제15조	R&D기술사업화 지원사업	1,800,000	
제15조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500,000	
제17조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500,000	
제17조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470,000	
제17조	지역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	10,000	
제17조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 지원사업	30,000	
제18조	R&D기관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	250,000	
제20조	과학문화 확산사업	330,000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시행 2022. 10. 21.] [전라북도조례 제5132호, 2022. 10. 21., 일부개정]

전라북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전라북도의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을 위해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사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생활과학 저변확대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의 독창적인 과학기술진흥을 도모하고 인재육성 및 과학기술 정보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기반강화 등에 대한 시책 추진과 독창적인 연구 개발, 공동연구개발 및 신기술의 보급·지원 등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진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에 의한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

제4조(위원회)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북도 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사업별 정책방향의 적합성,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조정 등 투자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 유치·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6. 기업체·연구소의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7.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12. 31>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10. 22, 2019. 12. 3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업유치지원실장, 미래산업국장, 농생명축산식품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연구원장, 전북테크노파크원장으로 한다.<개정 2014. 10. 22, 2019. 6. 21, 2019. 12. 31, 2022. 10. 21.>
2. 위촉직 위원은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연구회) 도지사는 위원회에 연구회를 두어 과학진흥정책 및 연구개발사업 발굴 기획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미래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4. 10. 22, 2019. 6. 21, 2022. 10. 21.>
-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제14조(총괄부서)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의 총괄부서를 미래산업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2.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관리
3.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4. 위원회 구성·운영
5.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전담기관)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테크노파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사업의 기획·평가(선정·중간 및 최종) 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실태점검 등 관리 지원
3. 연구개발 성과 활성화 지원
4. 기업기술애로 지원 및 통합관리 DB구축 운영
5.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의 기획 및 운영지원

- 6. 위원회 운영 지원
- 7.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16조(사업추진부서)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장 과학기술진흥사업

제17조(공동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연구원, 공공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과학기술 연구기반 확충 사업
- 2. 과학기술 연구·인력개발 촉진 사업
- 3. 과학기술 정보화사업
- 4. 전략산업 및 신기술개발 사업
- 5. 과학기술협력교류사업(국제협력교류사업을 포함한다)
- 6. 도민에 대한 과학기술 이해증진사업
- 7. 그 밖에 도지사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기관 등 유치 지원) ① 도지사는 도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략산업, 신성장 동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유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
- 2. 연구기관의 장비구입 등 기반확충
- 3. 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발굴 추진
- 4. 설립 초기 연구기관 운영비의 일부

② 도지사는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정주여건 개선, 인센티브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과학문화 확산 및 청소년 과학의식 제고사업) 도지사는 과학문화 확산 및 청소년 과학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하여 발명·연구·개발·응용 등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15 —

전라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I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례명	전라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구분	위임조례	관계 법령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
제정·시행일	2002. 12. 13.	최근개정·시행일	2011. 11. 11./2011. 11. 11. (일부개정 6회)
소관 부서	농업정책과 / 농업기반팀	소관 상임위	농산업경제위원회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목적 규정은 그 조례나 규칙의 입법목적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주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띄어쓰기 정비 검토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를 근거로 하여 적절한 위임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 관리방조제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내용의 적정성	적정	- 관리방조제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조례 내용이 적절함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현실 부합성	적정	- 전라북도 내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 조례 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기타 의견	- 없음	

II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 2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현행 유지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III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p>○ 최종의견 : (8-1) 「방조제 관리법」제3조의2에 따라 현행 유지 필요성이 확인됨</p> <p>○ 내용</p> <p>- (1-1)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조례가 제정됨</p>			
■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p>○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p> <p>-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내역 없음</p> <p>○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관리 방조제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운영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방조제의 관리와 관련된 행정의 원활성을 확보하는데 기여 <p>○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p>			
전라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제2조(시 관리방조제의 결정)	제2조(관리방조제의 범위)

제3조(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삭제)	제3조(삭제)		제3조(삭제)
제4조(심의회의 운영)(삭제)	제4조(삭제)		제4조(삭제)

-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IV 개정의견

현행	개정 의견	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전라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전라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조항 약칭 규정 삭제 -「방조제 관리법」의 제명 띄어쓰기 정비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별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관리방조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도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1. 포용조수량 <u>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u> 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u>4킬로미터</u> 미만의 지구와 포용조수량 <u>7백만세제곱미터</u> 미만 <u>3백만세제곱미터</u>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u>4킬로미터</u> 이상의 지구로서 국가관리 방조제가 아닌 지구 2. 포용조수량 <u>7백만세제곱미터</u> 미만 <u>3백만세제곱미터</u>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u>4킬로미터</u> 미만의 지구 3. 포용조수량 <u>3백만세제곱미터</u> 미만의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리방조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도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1. 포용조수량 <u>1천만세제곱미터</u> 미만 <u>7백만세제곱미터</u> 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u>4킬로미터</u> 미만의 지구와 포용조수량 <u>7백만세제곱미터</u> 미만 <u>3백만세제곱미터</u>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u>4킬로미터</u> 이상의 지구로서 국가관리 방조제가 아닌 지구 2. 포용조수량 <u>7백만세제곱미터</u> 미만 <u>3백만세제곱미터</u>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u>4킬로미터</u> 미만의 지구 3. 포용조수량 <u>3백만세제곱미터</u> 미만의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목적조항에서 삭제한 약칭 추가 -“도”를 약칭하고 사용하도록 약칭 정비 -띄어쓰기 정비

※ 심층분석

- 특별한 심층분석 내용 없음.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 검토

□ 참고자료 1 -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전라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제2조(시 관리방조제의 결정)	제2조(관리방조제의 범위)
제3조(관리방조제 심의 회의 구성)(삭제)	제3조(삭제)		제3조(삭제)
제4조(심의회의 운영) (삭제)	제4조(삭제)		제4조(삭제)

- 관리방조제 범위 관련 특이 시사점 없음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위원회 개최 현황

-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내역 없음

전라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11. 11.] [전라북도조례 제3647호, 2011. 11. 11., 일부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전라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3, 2011. 11. 11>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관리방조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도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개정 2011. 11. 11>

1. 포용조수량 1천만세제곱미터미만 7백만세제곱미터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미만의 지구와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미만 3백만세제곱미터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이상의 지구로서 국가관리 방조제가 아닌 지구
2.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미만 3백만세제곱미터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미만의 지구
3.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미만의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제3조(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삭제 2011. 11. 11.>

제4조(심의회의 운영) <삭제 2011. 11. 11.>

16

전라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

I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평가대상

조례명	전라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8. 2. 2.	최근개정·시행일	2018. 2. 2./2018. 2. 2. (제정)
소관 부서	주택건축과 / 주거복지팀	소관 상임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조항 띄어쓰기 정비 검토
	개정 권고	-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의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 정비 검토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적절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 조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이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내용의 적정성	-	- 조례 내 재정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현실 부합성	적정	- 주민 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 조례상 위원회 운영 규정 없음
※ 기타 의견	- 없음	

II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교육 및 홍보 -시·군 협력체계 구축 -포상 미실시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018.1.4. ~ 2018.1.9.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시행계획 관련 규정 정비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III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p>○ 최종의견 : (8-1)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분쟁으로 확대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주민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p>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하였음(2020.10.30.) - 시행사항: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권고(단지 관리규약 준칙 개정), 홍보 실시 - (2-5)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 미실시(조례 제5조) - (2-5)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음[층간소음 예방 캠페인 승강기 홍보 영상 게시 요청('19.11.13./ '20.3.3./ '20.5.15.),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관리 가이드북」 배포('20.6.16.), 「층간소음 관리 우수사례집」 배포('21.1.19.),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안내 요청(포스터, 안내 방송 문안, 홍보물 등)('21.1.20.),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운영 알림('21.4.1.),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포스터, 영상)('21.9.15.), 제도개선 권고(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22.10.12.),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홍보('23.1.10.),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운영 알림('23.2.2.)] - (2-5) 기관교류를 이행하고 있음: 시·군 협력체계 구축(층간소음 예방 홍보물 수시 배부 및 홍보 요청 등) - (2-5) 조례 제9조에 따른 포상 미실시하였음 - (2-5)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10차, '21.3.): 조례 제6조에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에 따라 도 준칙을 개정하여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준칙 제58조~제60조의2) - (5-4) 주민이 알기 쉽게 조례의 체계 및 용어를 규정함 	

■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정비 / 개정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내역 없음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갈등 최소화 및 층간소음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운영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층간소음 관련 갈등 예방 및 해소에 기여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층간소음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사업 추진)
제8조(홍보)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홍보)	제8조(재정 지원)
제9조(포상)	제9조(홍보)	제9조(시행규칙)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 전라남도 제8조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에는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IV 개정의견

현행	개정 의견	이유
<p>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신설></p>	<p>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의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p>	<p>-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의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정비하여 실태조사의 결과로의 환류 체계 마련 검토</p>
<p>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조치 및 권고방안 마련</p> <p>2.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 조정</p> <p>3.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 층간소음 갈등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홍보</p> <p>4. ~ 5. 생략</p> <p>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p>	<p>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조치 및 권고방안 마련</p> <p>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 조정</p> <p>3.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 층간소음 갈등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홍보</p> <p>4. ~ 5. 현행과 같음</p> <p>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인용 조항은 붙여 쓰도록 정비 검토</p> <p>-문장정비</p>
<p>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기관·법인·단체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法條)문장임</p>

<p>제9조(포상)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 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삭 제></p>	<p>-포상의 경우 「전라북도 포상 조례」가 적용되므로 규정실익이 없음(법제처 권고사항- 「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241면)</p>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p><삭 제></p>	<p>-개별조례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p>

※ 심층분석

□ 조례 제명 분석

- 「전라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는 타 시·도와 비교하여 그 내용상 특별히 개정이 필요한 시사점이 발견되지는 않음
- 다만, 조례 제명에서 “권고”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2023년 12월 현재 141,521건 조례 중 15건에 불과함.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조례 제명	지역
1. 가평군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시행 2015. 5. 27] [조례 제2440호, 2015. 5. 27, 제정]	경기도 가평군
2. 경기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시행 2013. 11. 11] [조례 제4637호, 2013. 11. 11, 제정]	경기도
3.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3. 1] [조례 제4853호, 2015. 2. 27, 타법개정]	경기도교육청
4. 광명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시행 2017. 3. 12] [조례 제2242호, 2017. 3. 12, 일부개정]	경기도 광명시
5. 광양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 [시행 2016. 11. 18] [조례 제1466호, 2016. 11. 18, 제정]	전라남도 광양시
6. 군산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시행 2015. 8. 3] [조례 제1258호, 2015. 8. 3, 제정]	전라북도 군산시
7. 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 권고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0. 30] [조례 제5166호, 2018. 10. 30, 제정]	대구광역시
8. 대전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 [시행 2022. 10. 18] [조례 제1923호, 2022. 10. 18, 제정]	대전광역시 서구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 [시행 2015. 4. 8] [조례 제1114호, 2015. 4. 8, 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 [시행 2020. 7. 8] [조례 제1541호, 2020. 7. 8, 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11. 동두천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시행 2014. 4. 18] [조례 제1717호, 2014. 4. 18, 제정]	경기도 동두천시
12. 순천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 [시행 2017. 3. 31] [조례 제1715호, 2017. 3. 31, 제정]	전라남도 순천시
13. 전라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 [시행 2018. 2. 2] [조례 제4520호, 2018. 2. 2, 제정]	전라북도
14.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시행 2023. 12. 1] [조례 제2556호, 2023. 12. 1, 일부개정]	충청남도 천안시
15. 포항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시행 2015. 7. 21] [조례 제1307호, 2015. 7. 21, 제정]	경상북도 포항시

- “층간소음” 방지 또는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85곳이며 그 중에서 전라북도만 “권고 조례로 제명을 규정하고 있음
- 향후 조례 개정 시 “권고”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타 시·도 사례 분석

- 전라남도는 제8조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8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전라남도의 사례를 반영하여 조례 규정 신설을 검토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의 건	이 유
<신 설>	제7조의2(재정 지원)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 지원 규정 신설 검토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위원회 개최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 위원회 설치여부를 알 수 없음
-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관련 자료 없음
- 추진계획 상 홍보, 서비스 등의 기록은 있으나, 예산편성 및 추진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공문으로만 시행여부 확인가능)

교육 및 홍보 결과

-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 승강기 홍보 영상 게시 요청('19.11.13. / '20.3.3. / '20.5.15.)
-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관리 가이드북」 배포 ('20.6.16.)
- 「층간소음 관리 우수사례집」 배포 ('21.1.19.)
-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안내 요청(포스터, 안내 방송 문안, 홍보물 등)('21.1.20.)
-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운영 알림('21.4.1.)
-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포스터, 영상)('21.9.15.)
- 제도개선 권고(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22.10.12.)
-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홍보('23.1.10.)
-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운영 알림('23.2.2.)

전라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

[시행 2018. 2. 2.] [전라북도조례 제4520호, 2018. 2. 2., 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조치 및 권고방안 마련
2.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 조정
3.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홍보
4.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5.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③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 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7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I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례명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7. 3. 10.	최근개정·시행일	2017. 3. 10./2017. 3. 10. (제정)
소관 부서	문화산업과 / 예술지원팀	소관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정비	- 띄어쓰기 정비 등 일반 정비 검토
	개정 권고	- 시행규칙 규정 삭제 권고(제9조)
	이행 권고	-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시행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조례상의 계획명과 동일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적절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 조례 제5조에 따른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시행 등을 이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내용의 적정성	적정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조례의 공정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 조례 제개정 시 입법 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현행 실효성	적정	- 전라북도 도민의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 조례 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기타 의견	- 없음	

II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별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와 통합 가능성 검토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시행계획 (2018~2022)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별첨1 참조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실적 : '23.9월 기준 5개 시·군 선정, 총60회 공연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5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7조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017. 2. 8. ~ 2017. 2. 13.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거리예술은 다양한 예술활동 중 하나로, 지역문화진흥법,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활성화가 가능하고 사업발굴 및 추진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평성 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기본계획 수립 권고 -조례 통합 가능성 검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III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p>○ 최종의견 : (8-1) 거리예술은 다양한 예술활동 중 하나로, 지역문화진흥법,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활성화가 가능하고 사업발굴 및 추진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유지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임</p> <p>- (8-3) 다른 유사한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폐지 사유가 확인됨</p> <p>○ 내용</p> <p>- (1-1)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예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이라 규정된 것에 근거하고 있음. 또한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함</p> <p>- (2-3)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시행계획 (2018~2022)’ 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p> <p>- (2-4) 조례 5조에 따라 거리예술활성화 및 지원 사업인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 를 개최함. 이에 전북문화관광재단 출연금 125,000천 원이 소요됨</p> <p>- (2-5) 거리예술활성화 사업은 2023년 9월 기준 5개 시·군을 선정하여, 총 60회 공연함</p> <p>- (2-5) 거리극 축제로 ‘노상놀이야’ 를 개최하였으며, 지역특화 거리예술 프로그램 상설 운영으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사업으로 추진함. 예산은 125,000천 원이 소요되었으며 전주·익산·남원·고창·부안 총 5개 시·군에서 실시함</p>	

- (3-1) 조례 제5조에 따라 거리예술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에 125,000천 원을 지원함
- (3-2) 조례 제7조에 도지사는 거리예술진흥을 위하여 도 내 14개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원 대상이나 범위는 적절함
- (3-3)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거리극 퍼레이드를 상설 운영함
- (3-4) 조례 제7조에 “도지사는 거리예술진흥을 위하여 도 내 14개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음
- (5-4)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이행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붙임1 참조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거리예술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거리극 퍼레이드 운영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질서유지)	제4조(거리예술가의 책무)	제4조(계획의 수립)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6조(시·군 협력체계 구축)	제6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6조(거리예술 활성화 사업)	제6조(시·군 협력체계 구축)
제7조(거리예술진흥 재정 지원)	제6조의2(거리예술 활성화 지역·공간의 운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거리예술진흥 재정 지원)
제8조(업무의 위탁)	제6조의3(거리예술지원센터)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시행규칙)	
	제8조(업무의 위탁)		

-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IV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6조(시·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u>도내</u> 14개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시·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u>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u> 내 14개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약칭을 하고 사용하도록 용어 정비 검토
제7조(거리예술진흥 재정 지원) 도지사는 거리예술진흥을 위하여 <u>도내</u> 14개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거리예술진흥 재정 지원) 도지사는 거리예술진흥을 위하여 <u>도 내</u> 14개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띄어쓰기 정비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u>정한다.</u>	<삭 제>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심층분석

- 집행부에서 “거리예술은 다양한 예술활동 중 하나로, 「지역문화진흥법」,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활성화가 가능하고 사업발굴 및 추진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유지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심층분석을 통해서 통합가능성을 검토
- 통합 대상으로 검토되는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근거한 위임조례임.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치조례임. 또한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는 제5장 총 13개 조문(가지조문 8개 별도)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로 조문의 구성체계를 살펴봐도 양 조례를 통합하는 경우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를 중심으로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양 조례의 구성체계를 비교하여 살펴봄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제1조(목적)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정의)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시·군 협력체계 구축)	제2장 지역문화진흥
제7조(거리예술진흥 재정 지원)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업무의 위탁)	제5조의2(전라북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제9조(시행규칙)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의5(위원의 해촉)
	제5조의6(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의7(위원회 운영)
	제5조의8(간사)
	제5조의9(수당 등)
	제3장 문화진흥 기반조성
	제6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7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제8조(협력활동 지원)
	제4장 문화유산 진흥
	제9조(문화유산 지원)
	제5장 생활문화 진흥
	제10조(생활문화 지원)
	제11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제12조(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제13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통합의 대상으로 검토되는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6. 23.] [전라북도조례 제4947호, 2021. 6. 10., 일부개정]

전라북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6.10.>

제2장 지역문화진흥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시에 제5조의2에 따른 전라북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6.10.>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4.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을 위한 사항
7. 생활문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군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제5조의2(전라북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6.10.]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도 지역문화진흥 관련 업무 국장

2.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3.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1.6.10.]

제5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이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10.]

제5조의5(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6.10.]

제5조의6(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6.10.]

제5조의7(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안전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6.10.]

제5조의8(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문화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6.10.]

제5조의9(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0.]

제3장 문화진흥 기반조성

제6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의개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 벽지,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3.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비

제8조(협력활동 지원)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장 문화유산 진흥

제9조(문화유산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고유한 문화유산 진흥에 필요한 전통문화 자원의 발굴 및 활용, 조사·연구지원, 지역 역사인문 활성화에 필요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북 역사 관련 연구·조사 지원
2. 전북의 유학·사상 및 호남실학 진흥사업
3. 향토문화유산의 연구·조사 및 보존·활용 관련 사업
4. 지역 인문학 기초 조사·연구 지원
5. 고유한 지역문화자원의 발굴·수집 및 활용·보존 지원

제5장 생활문화 진흥

제10조(생활문화 지원)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생활문화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생활문화시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나.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센터”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문화 활동에 활용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다수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에 공간을 제공할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건립, 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거리예술”과 “지역문화”의 개념이 일치하는가에 대해 살펴봄

· 이 조례에서 “거리예술”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하며, 「지역문화진흥법」상 “지역문화”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의미하는바 양 개념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현재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도지사가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재정 지원의 근거도 두고 있는 점에서 양 조례의 통합이 거리예술 활성화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음

- 거리예술 지원 조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라북도를 포함하여 28개에 이르고 있다는 점도 고려 필요. 현행과 같이 별도로 유지하면서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권고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위원회 개최 현황

- 위원회 규정 없음

□ 사업내역 및 추진실적

- 사업명 :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야’

- 주요내용 : 지역 특화 거리예술 프로그램의 상설운영(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사업으로 추진)

- 예산 : 125,000천 원

- 집행실적 : 5개 시·군(전주, 익산, 남원, 고창, 부안) 대표 관광지 거리극 퍼레이드 상설운영

(단위 : 천 원)

규정	사업명	예산('23년)	비고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사업)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125,000	전북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단위 : 천 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125,000	125,000	125,000	거리극 퍼레이드 상설 운영 (연간 5개소, 84회)
2022		125,000	125,000	125,000	거리극 퍼레이드 상설 운영 (연간 5개소, 84회)
2023		125,000	125,000	125,000	거리극 퍼레이드 상설 운영 (연간 5개소, 84회)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3. 10.] [전라북도조례 제4398호, 2017. 3. 10., 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예술 육성에 관한 시·군의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시·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내 14개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거리예술진흥 재정 지원) 도지사는 거리예술진흥을 위하여 도내 14개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8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I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례명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4. 12. 26.	최근개정·시행일	2022. 11. 4./2022. 11. 4. (일부개정 1회)
소관 부서	문화산업과 / 예술지원팀	소관 상임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조항 약칭 삭제 검토 - 인용법령 띄어쓰기 정비 검토 - 용어 사용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띄어쓰기 정비 - 중복적 표현 삭제 검토
	개정 권고	<p>- 제6조에서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 조례 제7조의2제2항에서는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해서 “공유 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민간위탁 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제3항에서는 “제2항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조치 결과와 제9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 및 제12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서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상 규정과 달리 재협약의 방법으로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임. 심층분석을 통해 해당 조항 개선 방안 검토</p>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적절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 조례 제5조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실시 등을 이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내용의 적정성	개정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음.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민간 위탁은 적절하지 않음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현실성	적정	- 전라북도 내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의 관람과 구입 및 여행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격차 해소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 조례 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기타 의견	- 없음	

II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 4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023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5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4조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민간위탁은 적정하지 않음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공정성 담보)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통합문화이용권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법률에는 통합문화이용권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로 정해야 할 필요성 있음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규정 개정 검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Ⅲ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p>■ 소관 부서 의견(팀)</p> <p>○ 최종의견 : (8-1) 통합문화이용권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법률에는 통합문화이용권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로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p>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1인당 연 11만원을 지원함. 총 예산은 16,244,090천 원으로 그 중 문예기금 11,546,810천 원, 지방지 4,677,280천 원임. 집행실적은 발급률 92.92%로 17개 시·도 중 2위이며, 예산 대비 이용률은 62.58%로 17개 시·도 중 3위임 - (3-1) 조례 제5조에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 관람과 이용 및 여행기회 제공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스포츠의 관람 및 여행을 할 경우 교통비와 식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146,119명을 대상으로 16,073,090천 원(기금 11,481,810천 원, 도비 1,377,380천 원, 시·군 3,213,900천 원)을 지원함 - (3-2) 조례 제4조는 지원 대상에 대하여 “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도내의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3-3) 2021년에서 2023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대상으로 11만 원을 지급하였음 	

(단위 : 천 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	11,223,200	11,223,200	10,205,37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10만원 지급
2022	-	16,164,390	16,164,390	13,448,15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11만원 지급
2023	-	16,073,090	16,073,090	10,057,843,20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11만원 지급

- (3-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위탁 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바우처 사업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경영 정책이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위탁대상으로 부적절함
- (3-6) 조례 제4조에 “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도내의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고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5-4) 2022년 11월 4일자로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하여 전라북도 119시민수상 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 조례를 개정함

■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붙임1 참조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등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경기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전라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6조(지원운영방법)	제6조(지원운영방법)	제6조(위탁 등)	제6조(지원사업)
제7조(권장사업)	제7조(권장사업)	제7조(권장사업)	제7조(시행규칙)
제8조(평가)	제8조(평가)	제8조(관리·감독과 평가)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IV 개정의견

현행	개정 의견	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전라북도</u> (이하 “도”라 한다)내 문화소외 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의 관람과 구입 및 여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전라북도</u> 내 문화소외 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의 관람과 구입 및 여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조항 약칭 삭제 검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실질적 빈곤층을 말한다. 2. 생략 3.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역주관 처”(이하 “지역주관 처”라 한다)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실질적 빈곤층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3.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역주관 처”(이하 “지역주관 처”라 한다)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인용 법률 제명 띄어쓰기 오류 정비 -“지역주관 처”로 띄어쓰기 정비
제3조(기본방향)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확보와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지역주관 처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과 여행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확보와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주관 처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과 여행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조제목을 조 내용과 맞게 “도지사 등의 책무”로 정비 검토 -“문화향유권”으로 띄어쓰기 정비 -“지역주관 처”로 띄어쓰기 정비
제4조(지원대상) 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u>도내</u> 의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u>전라북도</u> (이하 “도”라 한다) 내의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조 목적조항에서 삭제한 약칭 추가 -“범위내에서”는 중복적 표현임. “범위에서”로 정비 검토

<p>제6조(지원운영방법)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군을 통해 운영하거나, 지역주관처에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라 지역주관 처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약의 방법에 의하여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재협약은 위·수탁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제6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군을 통해 운영하거나, 지역주관처에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라 지역주관처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약의 방법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재협약은 위·수탁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조제목을 “지원방법”으로 간결하게 정비 검토</p> <p>-문장부호 추가하도록 정비 검토</p> <p>-“지역주관처”로 띄어쓰기 정비</p> <p>-“재협약”으로 띄어쓰기 정비</p> <p>-“의하여”를 “따라”로 정비</p>
<p>제7조(권장사업) 도지사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생략</p>	<p>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현행과 같음</p>	<p>-조제목을 “지원사업”으로 정비 검토</p>
<p>제8조(평가) ① 도지사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과 지역주관 처를 평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p>	<p>제8조(평가) ① 도지사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과 지역주관처를 평가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p>	<p>-문장부호 추가 정비 검토</p> <p>-“지역주관처”로 띄어쓰기 정비</p> <p>-문장 표현을 평가에 적합하도록 정비 검토</p>
<p>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p>-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p>

※ 심층분석

- 제6조에서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 조례 제7조의2제2항에서는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해서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민간위탁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제3항에서는 “제2항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조치 결과와 제9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 및 제12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서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상 규정과 달리 재협약의 방법으로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임. 심층분석을 통해 해당 조항 개선 방안 검토

- 현행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상 사무위탁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음

제6조(지원운영방법)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군을 통해 운영하거나, 지역주관처에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7조의 각 호의 사업(이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라 한다)을 지역주관처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역주관처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약의 방법에 의하여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재협약은 위·수탁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는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7조의2(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공유재산을 민간위탁시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 5. 10.>
②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민간위탁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③ 제2항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조치 결과와 제9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 및 제12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맞게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도록 검토

현행	개정 의견	이유
<p>제6조(지원운영방법)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u>시·군</u>을 통해 운영하거나, 지역주관처에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라 <u>지역주관 처</u>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 협약의 방법에 의하여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재 협약은 위·수탁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제6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u>시·군</u>을 통해 운영하거나, 지역주관처에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라 <u>지역주관처</u>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및 재위탁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2에 따른다.</p> <p>⑤ 현행과 같음</p>	<p>-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 정비</p>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위원회 개최 현황

- 위원회 규정 없음

□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실적

(단위 : 천 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문화누리카드 발급	11,223,200	11,223,200	10,205,37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 10만원 지급
2022	문화누리카드 발급	16,164,390	16,164,390	13,448,15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 11만원 지급
2023	문화누리카드 발급	16,073,090	16,073,090	10,057,843,20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 11만원 지급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95% 146,119명

- 사업내용 :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1인당 연간 11만원)

- 카드사업비 : 16,073,090천 원(기금 11,481,810, 도비 1,377,380, 시·군 3,213,900)

* 매칭비율 : 국비 71%, 지방비 29%(도비 31%, 시·군비 69%)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시행 2022. 11. 4.] [전라북도조례 제5144호, 2022. 11. 4., 일부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의 관람과 구입 및 여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실질적 빈곤층을 말한다.
2. “통합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필요로 하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의 관람과 여행기회 부여 및 적극적으로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역주관 처”(이하 “지역주관 처”라 한다)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확보와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도민은 매매와 양도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지역주관 처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과 여행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도내의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 관람과 이용 및 여행기회 제공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스포츠의 관람 및 여행을 할 경우 교통비와 식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운영방법)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군을 통해 운영하거나, 지역주관 처에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7조의 각 호의 사업(이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라 한다)을 지역주관 처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역주관 처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 협약의 방법에 의하여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재 협약은 위·수탁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권장사업) 도지사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

다.

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의 향유 및 여행기회 제공
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개정 2022. 11. 4.>
3. 도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평가) ① 도지사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과 지역 주관 처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19 —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I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례명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2. 7. 6.	최근개정·시행일	2012. 7. 6./2012. 7. 6. (제정)
소관 부서	문화산업과 / 예술지원팀	소관 상임위	문화관광건설위원회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통폐합)	일반 정비	- 인용 법령 제명 띄어쓰기 정비
	통합 권고	- 유사한 조례(「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가 존재하며, 사업발굴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음. 심층분석을 통해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와의 통합을 검토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적절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질 효성	부적정	-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총 3회 수립되었으나, 2019년 이후로는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관련 사업 및 예산 확보 실적이 없음
3. 조례내용의 적정성	개정	- 조례에서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실적은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현실 부합성	적정	- 전라북도 문화예술 진흥 및 해당 분야의 기부문화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 조례 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기타 의견	- 없음	

II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019년 이후 기본계획 미수립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5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예산 미집행, 지원실적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유사한 조례(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존재하며, 사업발굴 및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조례 통합 검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Ⅲ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p>○ 최종의견 : (8-1) 유사한 조례(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가 존재하며, 사업발굴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3) 다른 유사한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폐지 사유가 확인됨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에 따라 제정함 - (2-3) 조례에 따라 2015년, 2018년, 2019년 각각 ‘문화예술 후원 및 기부활성화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함 - (3-1) 조례 제5조에 도지사는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결연과 후원, 기부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등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6-1) 조례 제·개정 이후 11년 2월이 경과하였으나 전라북도 현실에는 부합하고 있음 	

■ **입법평가 종합의견** (통폐합) 일반 정비 / 통합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없음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집행 등이 실시되지 않아 조례의 목적달성도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 부수효과

- 조례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집행 등이 실시되지 않아 부수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움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부 활성화 사업의 지원)	제5조(재정지원)
제6조(포상)	제6조
제7조(시행규칙)	제7조(포상)
	제8조(시행규칙)

-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에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관련 조례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특별한 시사점 없음

IV 개정의견

현행	개정 의견	이유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물을 말한다.</p> <p>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정한 공연, 전시, 도서, 지역문화복지, 문화보급·진수시설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물을 말한다.</p> <p>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공연, 전시, 도서, 지역문화복지, 문화보급·진수시설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p>	<p>-조항은 붙여 쓰도록 정비 검토</p> <p>-인용 법령 제명 띄어쓰기 정비 검토</p>
<p>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p>1. 생략</p>	<p>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한 문장 표현 정비 검토</p>
<p>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p>-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p>

※ 심층분석

- 유사한 조례(「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가 존재하며, 사업발굴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음. 심층분석을 통해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와의 통합을 검토
- 통합의 대상으로 제시된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와 이 조례는 모두 자치조례임. 양 조례의 구성체계를 살펴봄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책무)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기부 활성화 사업의 지원)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제6조(포상)	제6조(재정지원)
제7조(시행규칙)	제7조(포상)

- 통합의 대상이 되는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의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시행 2016. 7. 8.] [전라북도조례 제4302호, 2016. 7. 8., 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재능기부를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력적 도민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민간단체 및 전문 기관과의 재능기부 네트워크 구축 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양 조례의 주요한 내용인 지원에 관한 규정을 비교하여 살펴봄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p>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 2. 민간 예술단체 및 전문예술법인과외의 기부 네트워크 구축 3. 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4. 그 밖에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p>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민간단체 및 전문 기관과의 재능기부 네트워크 구축 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5조(기부 활성화 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기부 활성화를 위한 결연과 후원 3. 기부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단체 등의 협력 5. 기부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 및 실비지원 6. 그 밖에 기부 활성화 및 기부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 	<p>제5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재능기부”가 “문화 예술기부”를 포섭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양 조례를 통합하는 경우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로의 통합을 고려하여야 함.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 지원에 관해서는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가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의 제5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현행	개정 의견	이유
<p>제5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p>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p>	<p>제5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도지사는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1.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결연과 후원 3.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단체 등의 협력 5. 기부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 및 실비지원 6.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 및 기부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p>	<p>「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의 사업 지원 규정을 포섭하도록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5조 개정 검토</p>

※ 앞서 입법취지와 조례의 기능이 유사한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또한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통폐합하는 방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세 조례의 구성체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1조(목적)
제3조(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용어의 정의)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제5조(기부 활성화 사업의 지원)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재정지원)	제6조(포상)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제7조(포상)	제7조(시행규칙)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6조의2(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7조(센터의 사업)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9조(센터의 지원)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12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 활동 장려)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제14조(포상 및 보상 등)
		제14조의2(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
		제15조(경력 인정 등)
		제16조(보험가입)
		제17조(실비지급)
		제18조(시행규칙)

·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의 사업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권고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 5.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재능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 5. 현행과 같음	-“자원봉사활동”에 재능기부를 포함하도록 정의조항 정비 검토
<신 설>	제12조의2(재능기부 활성화사업)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결연과 후원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의 사업 지원 규정을 포섭하도록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5조를 정비. 이 조항을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포섭하도록 규정 신설 검토

	<p>3.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민 관협력체계 구축</p> <p>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 단체 등의 협력</p> <p>5. 기부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 설 공간의 확보 및 실비지원</p> <p>6.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p> <p>7.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 및 기부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p>	
--	---	--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위원회 개최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 위원회 및 사업추진실적 없음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2. 7. 6.] [전라북도조례 제3711호, 2012. 7. 6., 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본 조례는 전라북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직접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나 단체에 현금이나 물품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재능기부까지를 포함한다.
2. “재능기부”란 문화예술 분야의 관련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하여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하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정한 공연, 전시, 도서, 지역문화복지, 문화보급·전수시설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예술기부 사업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
 2. 민간 예술단체 및 전문예술법인과 기부 네트워크 구축
 3. 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4. 그 밖에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기부 활성화 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기부 활성화를 위한 결연과 후원
3. 기부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단체 등의 협력
5. 기부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 및 실비지원
6. 그 밖에 기부 활성화 및 기부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

제6조(포상) 도지사는 기부에 참여하거나 기부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20 —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I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례명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7. 12. 29.	최근개정·시행일	2020. 9. 29./2020. 9. 29. (일부개정 1회)
소관 부서	관광산업과 / 관광정책팀	소관 상임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통폐합)	일반 정비	- 띄어쓰기 정비 검토
	통합 권고	- 소관부서에서 위원회 폐지를 원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는 방안 검토
	개정 권고	- “법정계획인 전북권관광개발계획 수립 시 전문가 및 시·군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추진하는 바, 별도의 위원회 구성보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아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음. 이를 반영하여 위원회 규정 정비 검토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적절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개정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이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단순 사업을 나열하는 수준임
3. 조례내용의 적정성	적정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함
4. 조례의 공정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현행 실효성	적정	- 전라북도의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시키기 위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적정	-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임
※ 기타 의견	- 없음	

II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관광진흥법」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7차 전북권관광개발계획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설치 -타 실태조사 참고 -전북문화관광재단에 위탁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제12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017.11.2.~11.22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전라북도 공정관광위원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전북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법정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위원회 별도 설치 불필요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관광사업이 세분화되고 있고,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을 요구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계획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북권역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법정계획인 전북권관광개발계획 수립 시 전문가 및 시·군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추진하는 바, 별도의 위원회 구성보다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필요

III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p>○ 최종의견 : (8-1) 관광산업이 세분화되어 있고,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을 요구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계획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북권역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지속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 법정계획인 전북권관광개발계획 수립 시 전문가 및 시·군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추진하는 바, 별도의 위원회 구성보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아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함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 조례에 따라 ‘제7차 전북관광개발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함 - (2-5)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공정관광 관련 벤처기업 발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므로 전담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함 - (2-5) 기후환경정책과 등 관련 타부서의 자원조사 및 전라북도 관광여건 및 자원조사를 활용하여 별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함 - (2-5) LNT, LGT 강의를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여행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북 가치여행 10회 진행을 통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 - (2-5) 조례 내 위탁과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으나 전북문화관광재단에 공기관대행위탁사업으로 추진하였음 - (2-5) ‘탄소중립(ESG) 친환경 전북여행’ 사업을 실시하여 <탄소없는 전북여행> 캠페인 및 프로모션 등 추진, <친환경 전북여행 스팟> 발굴 및 지원, 유관기관 협력 <ESG 친환경 전북여행> 프로그램 개발·시범운영, 기업 참여 ESG 친환경 전북여행 활성화 프로그램·캠페인을 운영함. 총 예산 도비 100,000,000 	

원이 배정되었으며, 72,719,500원이 집행됨

- (3-1) 조례 제12조에 따라 탄소중립(ESG) 친환경 전북여행 사업에 재정지원을 실시함
- (3-3) 2022년 탄소중립(ESG) 친환경 전북여행 사업을 위하여 필요예산 100,000천원을 확보하여 72,719천 원(사무관리비: 7,642천 원, 국내여비: 6,156천 원, 업무추진비: 9,286천 원, 행사홍보비: 66,078천 원, 행사실비보상금: 4,333천 원)을 집행함. 그리고 집행 잔액은 환수 처리함
- (7-1)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공정관광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7-2)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라북도 공정관광위원회’를 설치함
- (7-3) 위원회 위원 구성은 정원 10명 중 현원 9명, 당연직 1명, 위촉직 9명[남성 5명(55.5%), 여성 4명(44.4%)]으로 구성되어 있음
- (7-5) 전북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법정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여 현재 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필요 없음

■ 입법평가 종합의견 (통폐합) 일반 정비 / 통합권고 / 개정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붙임1 참조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공정관광 지원 계획 및 위원회 설치 등 공정관광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공정관광을 진흥시키고 확산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공정관광의 원칙)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5조(사업 등)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의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센터의 설치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회의 임기)	제8조(재정지원)	제8조(시행규칙)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수당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제10조(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	
제11조(지원 사업)	제11조(지원 사업)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공정관광 지원 센터)		
	제13조(재정지원)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		

-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IV 개정의견

현행	개정 의견	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전라북도 내</u>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확산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적 범위를 목적조항에 규정하도록 정비 검토 -목적조항에 맞게 문장 표현 정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관광목적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되고, 관광목적지 <u>거주주민</u> 의 주거환경과 생태자연환경,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관광목적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되고, 관광목적지 <u>거주 주민</u> 의 주거환경과 생태자연환경,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을 말한다.	-“거주 주민”으로 띄어쓰기 정비 검토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관광 육성 및 진흥계획을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관광 육성 및 진흥계획을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도지사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법정계획인 전북권관광개발계획 수립 시 전문가 및 시·군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추진하는 바, 별도의 위원회 구성보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아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음. 이를 반영하여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 신설 검토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전라북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에 관한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전라북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 시 구성하고 심의나 자문을 마치면 자동해산한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에 관한	-위원회에서 제4조의 계획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정비 검토

<p>사항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p>	<p>사항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p>	
<p>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전라북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u>위촉직 위원은 공정관광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u></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u>전라북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u></p>	<p>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전라북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u>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u> 2. <u>관광·사회·건축·도시계획·환경·법률 등 관련 전문가</u> 3. <u>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u> 4. <u>공정관광 실행과 관련한 전라북도민</u> 5. <u>그 밖에 공정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u>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u></p>	<p>-위원회의 구성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검토 -제4항: 문장 표현 정비</p>
<p>제7조(위원회의 임기) ① 생략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u>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③ 이하 생략</p>	<p>제7조(위원회의 임기) ① <u>현행과 같음</u>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u>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③ 이하 <u>현행과 같음</u></p>	<p>-연임 관련 규정 표현 정비 검토</p>

※ 심층분석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고 단순 사업을 나열하는 수준이며, 소관부서에서 위원회 폐지를 원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는 방안 검토

□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의 건	이 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8. 현행과 같음 9. “공정관광”이란 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관광목적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되고, 관광목적지 거주 주민의 주거환경과 생태자연환경,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을 말한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있는 정의 추가
제8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 1. ~ 4. 생략 <신 설>	제8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개별 나열된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규정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위원회 개최 현황

- 위원회 구성

구분	정원	현원	당연직	위촉직	
				남	여
위원수(명)	10	9	1	5	4
비율(%)	100	90	10	55.5	44.4

- 위원회 개최 현황

연도별	2021	2022	2023
개최건수	1	1	미정
개최일	12.27.~12.31	12.23	
소요예산	210,000원	700,000원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내역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탄소중립(ESG)친환경 전북여행	100,000	100,000	72,719	사무관리비 7,642 국내여비 6,156 업무추진비 9,286 행사홍보비 66,078 행사실비보상금 4,333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 9. 29.] [전라북도조례 제4824호, 2020. 9. 29., 일부개정]

전라북도(문화체육관광국 관광총괄과), 063-280-3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관광목적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되고, 관광목적지 거주주민의 주거환경과 생태자연환경,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공정관광의 원칙) 공정관광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1. 경제적 지속가능성
2. 사회적 지속가능성
3. 문화적 지속가능성
4. 생태적 지속가능성
5. 윤리적 관광소비
6. 관광목적지 지역주민에 대한 공정한 편익 분배 및 환원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관광 육성 및 진흥계획을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5.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전라북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전라북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정관광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전라북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 **연구용역** : 한국법제연구원(<https://www.klri.re.kr>)
 - 책임연구원 김동균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황이경 연구원, 최진화 인턴연구원
 - **심의·조정** : 전라북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 **편집·검토** : 전라북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지원팀 (063-280-4411)
 - **발행처** : 전라북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063-280-4410)
 - **발행일** : 2023년 12월 29일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